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韓·中 通商摩擦에 關한 法的
研究

-중국 법제를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田 柯

2007年 2月

韓 · 中 通商 摩擦에 關한 法的 研究

-중국 법제를 중심으로-

指導教授 徐庚林

田 柯

이 論文을 法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2月

田柯의 法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委 員 _____ (인)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6年 12月

Study on Legal Problems of Korea-China Trade Friction

-Focus on the legislation of China-

Tian-Ke

(Supervised by professor Kyong-Lim Se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Law

2006.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目 次

<Abstract>

第 1 章 序 論	1
第 1 節 研究의 目的	1
第 2 節 研究의 範圍	2
第 3 節 研究의 方法	3
第 2 章 韓·中 經濟關係 現況	4
第 1 節 韓·中 貿易 現況	4
1. 貿易現況	4
2. 貿易의 特徵	8
第 2 節 對中 投資現況	15
1. 中國의 外國人投資現況	15
2. 對中 投資現況	17
3. 對中 投資의 特徵	18
第 3 節 韓·中 通商에 대한 展望	21
1. 通商環境의 變化	21
2. 向後 展望	22
第 3 章 韓·中 通商摩擦의 法的 問題	25
第 1 節 概 說	25
第 2 節 韓·中間 貿易不均衡 關聯 通商摩擦	27
1. 貿易不均衡 現況 및 原因	27
2. 原產地制度 關聯 法制分析	31
3. 小結論	36

第 3 節 知的財産權 關聯 通商摩擦	40
1. 知的財産權 關聯 通商摩擦 現況	40
2. 知的財産權 關聯 法制分析	42
3. 小結論	49
第 4 節 産業被害救濟制度 關聯 通商摩擦	54
1. 産業被害救濟制度 關聯 通商摩擦 現況	54
2. 産業被害救濟 關聯 法制分析	56
3. 小結論	92
第 5 節 不公正貿易慣行 關聯 通商摩擦	97
1. 不公正貿易慣行 關聯 通商摩擦 現況	97
2. 貿易障壁調査 關聯 法制分析	101
3. 小結論	107
第 4 章 要約 및 結論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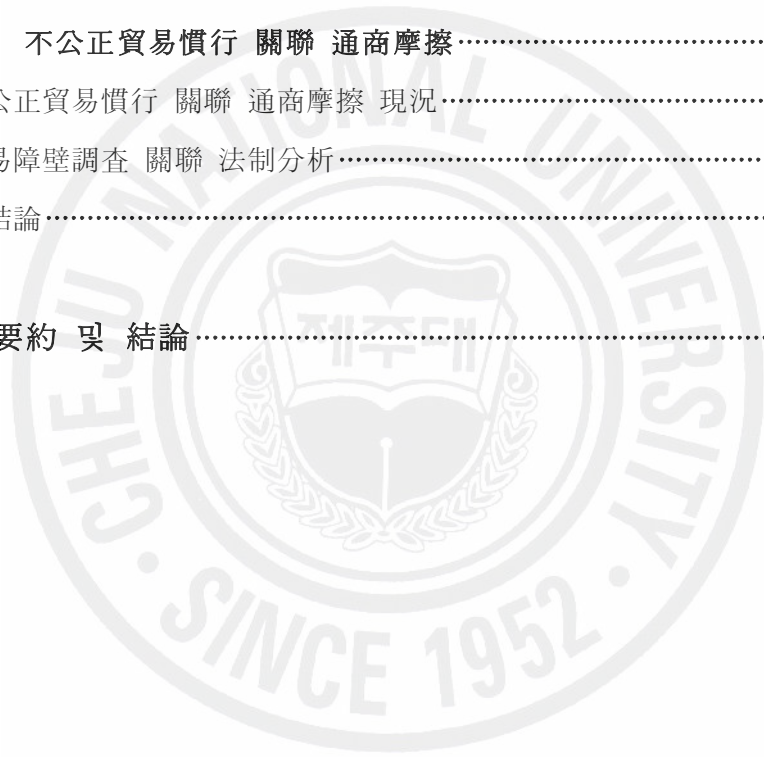


表 次 例

표 2-1	중국의 년도별 관세율 및 수입증가율 추이	5
표 2-2	년도별 중국 對韓 수출입	6
표 2-3	년도별 한국 對中 수출입	7
표 2-4	한국의 對中 교역의 비중추이	9
표 2-5	한국의 對中 주요 수출품목 통계	10
표 2-6	한국의 對中 주요 수입품목 통계	11
표 2-7	한국의 對中 수출의 산업별 비교	12
표 2-8	한국의 對中 수입의 산업별 비교	13
표 2-9	03~05'년간 중국의 지역별 對韓 수출입 통계	14
표 2-10	02~05'년간 중국의 외자도입	15
표 2-11	중국의 기업형태별 외국인직접투자	16
표 2-12	02~05'년간 한국의 對中 투자추이	18
표 2-13	03~05'년간 한국의 對中 업종별 통계	19
표 2-14	03~05'년간 한국의 對中 성(省)별 투자추이	20
표 3-1	한·중 무역수지 통계 통계차이	28
표 3-3	중국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규의 개정요약	43
표 3-4	중국의 對韓 반덤핑 수입규제 현황	55

<Abstract>

Study on Legal Problems of Korea-China Trade Friction

-Focus on the legislation of China-

Tian, Ke

Advisor: Prof. Kyong-Lim Seo, Ph.D.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At the advent of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hip in 1992, th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has progressively developed. For example Korea's merchandise trade with China topped \$100 billion in 2005 for the first time ever. As China had access into the WTO in 2001, China had reduced the tariff and cancelled non-tariff barriers step by step. It also quickly revise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urthermore, it increased the transparency of examination and approval. In 2004, Korea gave the complete market economy position at APEC top meeting that took place in Pusan. All of which has improved its whole business and trade environment for bilateral trade. But, at the same time there appeared a series of trade friction between two countries as the garlic dispute in 2000 which had created a very big impact on Korea.

It was necessary to study about trade policy and legislation of China. Many problems are still existing, after all China has adjusted its trade legislation not before long. Although, China revises the law and regulations rapidly, it still need quite a long time for getting standardized because its primary legislation has lots of differences with market economic coun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ver legal flaw for keeping away from conflict and damage.

In this thesis the legal problems on the trade fri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present condition is studied. Here we mainly focus on the legislation of China.

This study consists of 4 chapters. At first, the situation which includes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presented. According to economic data, it analyzes the feature classified by period, region and the category of industry.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se features it attempts to find out the main reason for the trade fric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trade imbalance and Protecting the domestic industry are regarded as the major reasons that lead to the trade friction. Secondly, the law and regulations related with Orig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ti-dumping, countervailing, safeguard, unilateral trade measures are discussed. Based on some concrete cases, it was noticed some issues about China trade legislative system and suggested related solution plan to settle the trade fri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目的

오늘날 세계경제는 두 개의 상반된 추세인 세계주의와 지역주의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세계경제질서의 두 가지에 분명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90년대 이후 한국의 이웃으로 중국이 현저하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 현실 앞에서 한국 경제도 중국과 구체적인 지역협력의 필연성이 대두되었다.

양국은 현재까지 통상의 고속적인 발전과 각각의 영역에 광범위하게 교류·협력함으로써 상호간 경제적 의존성·보완성을 강화하고 심화하게 되었다.¹⁾ 이렇게 함으로써 양국은 통상관계의 빠른 발전에 따라 허용되는 법률·규칙을 효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가 또 적용할 수 있는가 등의 과제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과제 속에서 한·중 양국의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순조로운 무역을 위한 법규와 행정명령의 검토는 더없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한·중 양국의 통상무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통상의 각 측면 또는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의료와 같이 통상의 모든 부문에 걸쳐 마찰이 급격하게 늘고 양국은 덤핑관세부과, 불공정무역 등의 수단을 빈번하게 사용한다. 그리고 중국과의 장기적인 무역 불균형은 양국 교역의 정상적인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통상마찰은 경제 세계화·무역자유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며, 국가별 산업의 국제경쟁력 強弱과 자국의 최대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발생하고 있다.²⁾ 이와 관

1) 김희욱, “아시아·태평양 경제권과 한중경제협력”, 『임해지역개발연구』 (제16호), pp.135-151.

2) 黃漢民·錢學鋒, “論經濟全球化下貿易摩擦的新發展”, 『中南財經政法大學學報』, 2003年 第3期, pp.69-71.

련하여 한·중 양국의 비약적인 무역증대에 비해 한국에 대하여 중국의 직접 투자가 아주 낮은 것은 한·중간 통상마찰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양국의 교역상품의 특징과 교역시장의 집중도 한·중간의 마찰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

본 연구는 한·중간 통상환경의 過渡期인 현 시점에서, 한국정부의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이 지향할 법규체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국의 통상법체제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지도이론을 모색하고, 무역관행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행정적 구성과 대안을 찾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양국통상의 확대에 따른 통상마찰의 위험을 덜고, 통상마찰이 발행한 이후에 법이 적용하는 조치나 제도를 규정하고,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법률적 효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第 2 節 研究의 範圍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3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중양국간 교역의 증대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통상마찰에 관한 현실적인 배경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통상마찰에 관한 법규가 무엇인지 그 개념과 유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는 양국마찰의 출현요인과 이와 관련된 법규·정책에 대한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둘째, 한·중간의 대표적인 통상마찰유형은 덤핑문제, 지적재산권문제, 국제수지문제 및 일방적인 조치문제로서 이들에 관한 중국법체제의 구성과 개혁을 서술하고, 법규·정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를 도출하려 한다.

셋째, 중국과 세계선진국의 통상마찰을 비교·평가하여 얻게 된 법적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한국이 중국과의 통상을 증진시키면서 관련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는 한국의 현행 통상법과 무역정책을 중국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 중국과 선진국간의 통상마찰현안을 검토하고 한국에 대한 의의와 참고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에서는 한국의 對中 통상법규는 제외한다.

第 3 節 研究의 方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사례연구 및 비교연구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첫째, 정확한 이론 파악을 위하여 국내외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국내외 관련 저서나 발표논문, 통계자료 또는 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하고, 통상마찰에 관한 정부기관의 자료집을 참조하였다.

둘째, 한·중 통상마찰에 대한 기존사례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중국과 기타 국가간의 일련의 통상마찰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셋째, 비교연구방법으로 정책분석비교와 데이터분석비교방법을 이용하여, 중국이 다른 국가와의 통상마찰을 주로 법적으로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第 2 章 韓·中 經濟關係 現況

第 1 節 韓·中 貿易 現況

1. 貿易現況

1) 중국의 WTO가입

2001년 12월 11일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현저하게 변화된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³⁾

첫째, 대외경제법제가 더욱 완비하였고 행정관리의 규범성·효율성이 더욱 제고되었다. WTO 가입으로 중국은 「특허법」, 「상표법」, 「적작권법」,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과 규칙이 개정되거나 보완입법이 되었다. WTO협정에 따라서 정부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외경제 정책이나 조치에 관한 상황을 WTO에 通報하는 전문 기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WTO 가입 이후 무역·투자와 관련된 법규를 개정 제정 및 폐지한 것이 수백 건에 달하고 있다.

둘째, WTO 협정상의 관세인하의무를⁴⁾ 이행하기 위하여 절차에 따라 실질적으로 관세를 삭감하였다. 중국은 2005년까지 공업제품 평균관세율을 15.3%에서 10% 전후로 인하하여, 개도국 평균 수준 이하로 조성하였다. 또한 일부 화학공업제품, 오토바이부속품, 자동차부속품, 카메라 등의 쿼터(Quota)·수입허가증에 대한 조치를 취소하였다.⁵⁾

3) 中國網, 『中國入世報告』, 2002 (<http://www.china.org.cn/chinese/>).

4) 「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ection I-A: Tariffs」, 「Section I-B: Tariff Quotas」, 「Part II: Preferential Tariff (if applicable)」.

5) 中國商務部, 『2004國別貿易報告』, 2005, p.62.

표 2-1 중국의 년도별 관세율 및 수입증가율 추이

연 도	평균관세율(%)	수입증가율(%)
1999. 1	16.7	18.1
2000. 1	16.4	35.8
2001. 1	15.3	8.2
2002. 1	12.0	21.2
2003. 1	11.0	39.9
2004. 1	10.4	35.8
2005. 1	9.9	14.9

자료: 중국 세관(<http://www.customs.gov.cn/>)
2005년 수입증가율은 1~8월간 기준

셋째, 서비스무역영역의 개방을 촉진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과의 합자회사(Equity Joint Ventures)나 합작회사(Contractual Joint Ventures), 독자회사(foreign-owned enterprises)를 설립함으로써 금융, 보험, 전자통신, 대외무역, 상업, 운송, 건축, 여행 및 중계서비스 등의 영역에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⁶⁾ 2004년10월까지 외국금융기구에 대한 개방도시는 상해, 광주 등 총 16개에 이르렀으며, 외국은행은 163개, 代表處는 223개가 등록되었다. 또한 한국의 외환은행, 하나은행 등이 중국에 분점을 설립하였다. 외자보험회사는 총 자본액이 235억 인민폐를 기록하였다.⁷⁾

넷째, 중국은 다자간무역체제를 보완하여 시장경제체제로 발전시키고 있다. 예컨대 중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FTA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있다. 현재 중국경제는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성장률은 8%수준을 약간 하회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WTO에 가입함에 따라 투자규모의 적절한 통제와 투자효율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산업구조조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 대한 개발 즉 서

6) 汪小亞, 『世紀門檻的中國金融改革』, 中國金融出版社, 1999, p.253.

7) 于施洋, "入世一年後中國證券市場融資政策分析", 『中國入世報告』, 2002. (<http://www.china.com.cn/chinese>)

부대개발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간 발전격차를 해소하고 있다.⁸⁾

2) 한·중간의 무역현황

21세기에 들어와서 한·중간의 교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2년에 한국은 홍콩을 포함한 對中 수출 비중(20.9%)이 처음으로 對美 수출(20.1%)을 초과, 중국은 한국의 제1위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이제까지 한·중간 무역 규모는 91년도에 44.4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1119.3억불에 달함으로 91년도 대비 약 20배나 증가하였다. 중국 세관통계에 의하면 2000년 한국은 일본·미국·홍콩에 이어 중국의 4번째 교역상대국이 되었고 2005년에는 3번째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표 2-2 년도별 중국 對韓 수출입

년도	수입	수출	교역총액	증가율
2000	232.1	112.9	345.0	37.8
2001	233.9	125.2	359.1	4.1
2002	155.0	285.7	440.7	22.8
2003	431.3	201.0	632.3	43.5
2004	622.5	278.2	900.7	42.5
2005	768.2	351.1	1119.3	24.3

자료: 중국 세관(<http://www.customs.gov.cn/>)

단위: 억 달러, %

위의 중국 통계 데이터와 한국통계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홍콩을 통한 우회수출, 통계집계 기준차이 등에 기인한다. 한국 통계 데이터는 중국 데이터와 차이가 있으나, 양국의 무역이 질적 양적으로 발전한 것은 인지할 수 있다. 현재 한·중간의 무역총액은 이미 한·미간의 무역총액을 초과하였

8) 王憲磊, “入世元年中國經濟体制的十二大變化”, 國家信息中心發展研究部, 2002.(<http://www.china.com.cn>)

고,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대상국 및 제1의 수출시장이 되었다. 중국의 교역국 중에서도 한국과의 무역증가율이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 무역증가율은 중국의 최대 무역교역대상인 EU와의 무역증가율보다 더 높다. 한국통계데이터는 다음 표2-3과 같다.

표 2-3 년도별 한국 對中 수출입

년도	수입	증가율	수출	증가율
2000	128.0	44.4	184.6	34.9
2001	133.0	3.9	181.9	-1.4
2002	174.0	30.8	237.5	30.6
2003	219.1	25.9	351.1	47.8
2004	295.9	35.0	497.6	41.7
2005	386.5	30.6	619.1	24.4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단위: 억 달러, %

양국간의 무역이 대폭적으로 증가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양국의 경제가 계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예컨대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004년 중국은 9.5%, 한국은 5%내외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따라 당연히 수출입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한국제품의 매우 강한 경쟁력을 들 수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여러 가지 첨단기술 제품과 상품가격이 중국시장에 적합하였고, 우수한 애프터서비스도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

셋째,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설립한 현지공장으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을 다시 한국으로 수출함으로써 중국 對韓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찾을 수 있다.

넷째, 최근 한국 기업들이 對中 직접투자자로 한국기업의 대중 수출증가를 꾸준히 이끌고 있다.

2. 貿易의 特徵

1) 양국의 통계차이

한국과 중국의 일부 교역제품이 홍콩의 중계무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계무역(transit trade)이라 함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⁹⁾

홍콩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없는 자유무역항으로서 대외교역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한국과는 통상마찰이 전혀 없으며 특별한 경제현안도 부각되지 않고 있다. 홍콩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이며 대외무역에 있어서도 對中 본토 교역의 중계무역항 역할을 하고 있어 한국의 대홍콩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다. 예컨대 2004년 홍콩이 한국으로부터 181.3억 달러를 수입하여 이중 61.8억 달러를 중국으로 재수출함으로써 한국의 대홍콩 수출금액 중 34.1%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1,071.3억 달러를 수입하여 이중 25.8억 달러를 한국으로 재수출함으로써 중국의 대홍콩 수출금액 중 2.4%가 한국으로 재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중국으로 재수출한 금액 61.8억 달러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한국으로 재수출한 금액 25.8억 달러간 순차인 36억 달러는 결국 중국 무역통계에만 대한 한국수입으로 계산되어¹⁰⁾ 한·중간 수출입통계차이를 초래하고 있다.

2) 교역비중변화

1992년 한·중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한국의 총교역에서 對中 교역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총교역액에서 對中 교역액이 차지하는

9) 하강현, 『최신무역실무』, 학문사, 2001, p.13

10) 香港貿易發展局統計處. (<http://www.tdctrade.com/>)

비중은 1992년 4.0%에서 2004년 16.6%까지 증가하였다. 1992년 한국의 총교역 중 23.0%를 차지하던 對美 총교역은 2004년 14.1%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1992년 한국의 총교역액 중 19.6%의 비중을 차지하던 對日 교역총액도 2004년에는 14.2%까지 감소하였다.

한국의 對中 수출액의 경우, 한국의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3.5%에서 2004년 19.6%까지 증가함으로써 1992년 동기대비 1,781%의 성장률을 보인다. 2004년 한국 對中, 對美, 對日 수출액이 한국전체의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0%로 1992년의 42.2%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한국의 對中 수입액의 경우, 한국의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4.6%에서 2004년 13.2%까지 증가하였다. 따라서 對中 수입액과 비교해 보면 對中 수출액의 증가폭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중국, 일본, 미국 삼개국의 수입총액이 한국의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6%로 1992년의 50.8%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對中 수입비중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표 2-4 한국의 對中 교역의 비중추이

년도	한·중 수출입총액	한국 수출입총액	한·중수출입 총액 비중
2002	41,154	314,597	13.1
2003	57,019	372,664	15.3
2004	79,348	478,308	16.6
2005	1005.6	5456.6	18.4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단위: 백만 달러, %

3) 품목별의 특징

(1) 한국의 對中 주요 수출입 품목의 다양화

품목별로는 세계시장을 향한 중국의 가전제품, 통신기기의 생산 기지화 및

내수확대로 핸드폰, 컴퓨터, 반도체 등 IT관련 제품과 승용차 등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어, 수출 상품 구조가 고도화 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對韓 주요 수출제품은 천연섬유류, 농수산물, 광물성 생산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5 한국의 對中 주요 수출품목 통계

품목명	2003		2004		20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4,399	45.3	6,940	57.8	11,379	64.0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	3,895	104.1	5,660	45.3	5,610	-0.9
유기화학물	3,098	35.0	4,802	55.0	5,978	24.5
통신 및 녹음기기	4,106	37.3	4,720	15.0	5,200	10.2
철 및 강	2,712	86.4	3,452	27.3	3,879	12.4
플라스틱(원료형태의 것)	2,149	25.3	3,130	45.7	3,778	20.7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물질	1,810	49.6	2,777	53.4	3,343	20.4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문, 과학, 통계기구 및 장치	687	392.3	2,325	238.5	4,708	102.6
특수산업용 기계	1,916	63.0	2,250	17.4	2,181	-3.1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SITC 2단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한·중간의 교역량과 교역품목이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의 對中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기계, 철강, 석유제품, 플라스틱 등 중공업 제품이었다. 특히 1997년 이후에는 전기기계와 석유화학제품이 강세를 보인다. 1997년 이후부터 최근에는 전기기계, 사무용 기계 등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중국의 對韓 수출 주력품목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양국간 교역품목의 추이를

살펴보면 수출입 품목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양국의 산업이 경쟁적 측면보다 상호보완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양국 간에는 수평적 분업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동일산업 내에서도 원자재와 최종 제품 생산이 구분되어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혹은 저부가가치 제품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구분되어 생산, 교역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2-6 한국의 對中 주요 수입품목 통계

품목명	2003		2004		20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3,937	44.6	5,451	38.4	7,029	29.0
철 및 강	852	68.0	2,756	223.3	4,255	54.4
사무용 기계 및 자동 자료 처리장치	1,594	47.5	2,380	49.3	3,529	48.3
의복제품 및 의복부속품	1,952	14.2	2,144	9.9	2,245	4.7
통신 및 녹음기기	1,259	22.8	1,827	45.1	2,243	22.8
석탄, 코크 및 연탄	1,004	8.1	1,557	55.1	1,529	-1.8
비철금속	892	37.5	1,399	56.9	1,671	19.4
섬유사, 직물, 직물제품	1,095	-	1,224	11.8	1,488	21.6
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및 수생무척추동물	707	-0.5	902	27.5	927	2.9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SITC 2단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 한국의 對中 수출입 품목의 유사성 증가

1992년에 한국의 對中 10대 수출품목과 10대 수입품목에서 동일한 것은 철강제품, 직물, 광물성연료, 정밀화학제품의 4개 품목이다. 2005년 한국의 對中 10대 수출품목과 10대 수입품목에서 겹치는 것은 산업용전자제품, 철강제품,

식품, 광물성연료, 전자부품, 가정용전자제품의 6개 품목으로 전보다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의 對中 주요 수출품목과 주요 수입품목 사이에 구조적인 유사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양국간 교역품목의 구조가 해를 거듭할수록 유사해지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산업발전에 따른 무역구조의 고도화 때문이다.

4) 산업별의 특징

실제 주요품목에서의 한·중간 산업 내 구조를 살펴보면 식품을 제외한 경공업제품, 중화학제품, IT제품 등의 산업 내 구조가 1992년부터 지금까지 양국간 서로 보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한·중간 동종 산업 내에 무역이 활발히 진전되면서, 국제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려는 경향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표 2-7 한국의 對中 수출의 산업별 비교

산업별	2003		2004		2005	
	금액	구 성 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 성 비
총수출	35,110	100.0	49,763	100.0	61,915	100.0
1차제품	328	0.9	482	1.0	495	8
공산품	34,782	99.1	49,281	99.0	61,420	99.2
경공업제품	4,278	12.2	4,682	9.4	5,120	8.3
중화학제품	30,504	86.9	44,599	89.6	56,300	90.9
IT제품	10,456	29.8	14,550	29.2	18,726	30.2
기타	20,048	57.1	30,048	60.4	37,575	60.7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신MTI기준, 경공업제품, 중화학제품, IT제품이 공산품에 포함된다.

단위: 백만 달러, %

표 2-8 한국의 對中 수입의 산업별 비교

산업별	2003		2004		2005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 성 비
총수입	21,909	100.0	29,585	100.0	38,648	100.0
1차제품	4,617	21.1	5,089	17.2	6,191	16.0
공산품	17,292	78.9	24,496	82.8	32,458	84.0
경공업제품	4,615	21.1	5,295	17.9	6,226	16.1
중화학제품	12,677	57.9	19,201	64.9	26,232	67.9
IT제품	4,354	19.9	6,265	21.2	8,539	22.1
기타	8,323	38.0	12,936	43.7	17,693	45.8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신MTI기준; 경공업제품, 중화학제품, IT제품이 공산품에 포함된다.

단위: 백만 달러, %

5) 지역별의 특징

일반적으로 중국의 지역은 東北三省(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華北地域(북경, 천진, 하북성, 산둥성), 華東地域(상해, 강소성, 절강성), 華南地域(광둥성, 북건성, 해남성), 華中地域(안휘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강서성), 西南地域(사천성, 중경시, 광서자치구, 귀주성, 운남성), 西北地域(신강, 감숙, 칭해), 其他地域(내몽고, 산서성, 섬서성, 영하자치구, 티벳)으로 분류된다.

양국간 무역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한국과의 수출입은 중국의 연해 성에 집중되고 있다. 즉 東北三省, 華北地域, 華東地域과 華南地域이다.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는 의존적인 對中 수출구조로 지역적 편중성이 심하다. 투자 의존적인 수출구조로 인해 원자재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가지며. 지역적으로 환발해만(環渤海灣)지역, 동북삼성과 화북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주요 수입지역인 화남지역과 화동지역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2-9 03~05'년간 중국의 지역별 對韓 수출입 통계

성별	2003		2004		2005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후룡강성	325	186	244	228	372	229
길림성	458	136	374	153	634	169.0
요녕성	1,612	1,908	2,364	2,065	3,067	2,165
북경	365	2,019	555	3,469	788	4,406
천진	1,379	3,941	1,670	5,297	2,095	6,403
산둥성	4,210	5,465	5,580	7,117	6,690	9,243
강소성	2,280	7,545	3,602	14,391	5,420	22,231
상해	1,360	5,358	2,340	7,711	2,853	8,053
절강성	1,392	2,498	1,686	3,280	2,084	3,844
광둥성	2,602	10,827	4,167	14,510	4,505	16,221
복건성	406	1,892	499	2,226	657	2,067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단위: 백만 달러

第 2 節 對中 投資現況

1. 中國의 外國人投資現況

1) 中國의 外國人투자현황

1980년대 말 중국의 긴축정책과 천안문사태 등 정치적인 변화로 인해 다소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던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1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¹¹⁾ 특히 1992년 초 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 중국의 개혁과 개방정책이 다시 가속화되면서 1992년 한해동안 전년대비 약 4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 2002년 중국투자는 기준 투자건수가 34,171건, 계약액이 827.68억 달러, 실행액이 468.78억 달러에 달해 미국을 제치고 최초로 세계 1위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다. 2004년까지 중국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총 508941개, 계약액은 10966.08억 달러, 실행액은 5621.01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¹²⁾

표 2-10 02~05'년간 중국의 외자도입

항 목		2002	2003	2004	2005
외 자 도 입	계약건수	34,171	41,081	43,664	44001
	계약액	847.5	1169.0	1565.9	1925.9
	실행액	550.1	561.4	640.7	724.1
외국인 직 접 투 자	계약건수	34,171	41,081	43,664	44001
	계약액	827.7	1150.7	1534.8	1890.7
	실행액	527.4	535.1	606.3	603.3
외 국 인 기 타 투 자액	실행액	19.8	183	31.1	34.8

자료: 중국 상무부 상무통계(<http://www.mofcom.gov.cn/tongjiziliao/tongjiziliao.html>)
단위: 건, 억 달러

11) 周駿 외, 『2005年中國金融与投資發展報告-投資与資本市場』, 中國金融出版社, 2005, pp.46-51.

12) 中國商務部新聞辦公室, “全國吸收外資情況”.
(http://win.mofcom.gov.cn/book/htmfile/type_dir/G394_1.htm)

2) 투자방식

중국의 대외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2년에는 합자·합작기업의 투자건수가 전체투자의 82.1%를 차지하여 중국 투자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 독자기업의 투자건수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절반이상(54.1%)을 차지함으로써 투자방식이 합자·합작에서 독자기업형태로 뚜렷하게 전환되고 있다. 독자기업형태의 투자는 97년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외국기업의 對中 투자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이자, 중국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조치들이 외국인 독자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¹³⁾

표 2-11 중국의 기업형태별 외국인직접투자

항 목		2002	2003	2004	2005
계약 건수	합자경영기업	34,171	41,081	43,664	10,480
	합작경영기업	10,380	12,521	11,570	1,166
	외자기업	1,595	1,547	1,343	32,308
	외자주식회사	22,173	26,943	30,708	47
	합작개발	19	37	43	0
	기타	4	8	0	0
계약액	합자경영기업	0.0	25.0	0.0	32,442.0
	합작경영기업	6,217.0	7,479.0	7,788.0	8,691.0
	외자기업	57,255.0	81,609.0	117,275.0	145,909.0
	외자주식회사	739.0	389.0	774.0	2,022.0
	합작개발	55.0	86.0	0.0	0.0
	기타	0.0	0.0	0.0	0.0
실행액	합자경영기업	14,992.0	15,392.0	16,386.0	14,614.0
	합작경영기업	5,058.0	3,836.0	3,113.0	1,831.0
	외자기업	31,725.0	33,384.0	40,222.0	42,961.0
	외자주식회사	697.0	328.0	777.0	918.0
	합작개발	272.0	33.0	109.0	0.0
	기타	0.0	531.0	25.0	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경제DB(<http://www.kita.net/>)

단위: 건, 백만 달러

13) 周駿 외, 前掲書, pp.121-122.

3) 업종별 투자현황

현재 중국의 업종별 투자를 살펴보면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건수 및 전체 계약투자액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부동산투자와 유통업 부분의 투자가 각각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투자 비중은 해외 다국적기업들의 생산기지의 중국이전 등으로 높은 투자액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부동산투자는 서비스시장 개방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유통업 분야는 대외무역법의 실시 및 유통영역의 개방에 따라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증권 분야의 외상투자 제한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외자유치가 최근 1~2년간 급격한 상승세를 이루고 있다. 기타 지질탐사, 교육, 문화, 방송, 채굴업,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부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⁴⁾

2. 對中 投資現況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FDI)는 2005년 말 실행 기준으로 총 13,177건(누계)에 130.6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1992년 12월말의 170건, 1.4억 달러에 비하여 건수를 기준으로 약 78배, 투자규모를 기준으로 약 93배가 증가된 것으로서,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민간 주도하여 협력 파트너 관계로 계속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3년 동안 한국의 대외투자에서 중국의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한국의 총 투자건수(누계) 27,272건과 투자금액(누계) 572.1억 달러 중, 對中 투자건수(누계)와 투자금액(누계)는 각각 총 13,177건, 130.6억 달러에 달해 對中 투자가 한국의 대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8.3%, 22.8%이다.

현재 한국의 對中 투자는 총 대외투자의 22.8%를 차지함으로써,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 기업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 개방 및 내수시장 확대 등으로 對中 투자 진출의 활

14) 周駿 외, 前掲書, pp.128-130.

성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2 02~05'년간 한국의 對中 투자추이

년도	2002	2003	2004	2005	Total
투자건수	1,381	1,678	2,152	2,232	7,443
계약금액	1,019,508	1,642,348	2,291,145	3,501,617	8,454,618
순투자 금액	863,031	1,510,054	1,969,007	2,581,324	4,623,41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kr/index.jsp>)

단위: 건; 천 달러

3. 對中 投資의 特徵

1) 업종별의 특징

한국의 업종별 對中 투자를 살펴보면, 투자금액기준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1위를 차지하는 건실한 형태를 보여준다. 이는 한·중간 제조업의 강한 상호보완성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및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으나, 건수,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의 對中 투자비중이 이렇게 높은 것은 한국에서의 국내 고임금에 對中의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활용이라는 대내요인과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출요구, 서비스 부문 등 내수 시장 미개방 등의 대외적인 요인이 상호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한편, 중국의 WTO가입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 요구가 수출장려로 완화되었고,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개방되고 있다.¹⁵⁾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최근 대중국 해외투자동향』, 2005.5.12.

표 2-13 03~05'년간 한국의 對中 업종별 통계

업종명	2003			2004			2005(1~11월)		
	건수	계약금액	실행액	건수	계약금액	실행액	건수	계약금액	실행액
농림어업	22	4,755	4,695	31	11,426	5,404	27	7,848	7,848
광업	6	8,187	8,187	12	2,854	2,854	3	11,498	11,498
제조업	1,393	1,465,911	1,353,251	1,682	2,063,424	1,818,162	1,225	1,705,621	1,610,563
건설업	12	10,527	10,527	23	33,476	27,276	42	47,973	46,973
도소매업	88	72,853	71,791	93	89,454	88,127	216	183,229	181,947
운수창고업	1	4,263	-1,012	5	1,662	1,662	17	26,695	24,295
통신업	6	6,875	6,865	4	557	303	1	331	331
금융보험업	0	0	0	0	360	360	1	10,000	10,000
숙박음식업	31	5,746	-4,657	94	19,173	-43,47	84	20,162	20,100
서비스업	105	45,525	44,701	200	59,205	59,205	173	57,223	55,806
부동산업	14	17,706	15,706	8	9,054	8,625	19	21,143	20,683
기타	0	0	0	0	500	500	0	0	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kr/index.jsp>)

단위: 건, 천 달러

2) 지역별의 특징

지역별로는 산둥성, 천진 등 환발해만(環渤海灣) 지역과 동북3성 지역이 가장 높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상하이(上海), 광둥성(廣東省) 등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 및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등으로의 투자비중이 점

차 증가 추세에 있다. 환발해만 및 동북3성의 투자비중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동남지역인 상하이(上海), 강소성(江蘇省), 광둥성(廣東省), 복건성(福建省) 등지로의 투자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종전의 제3국 수출형 제조업 투자 중심에서 가전, 통신, 유통, 금융 등의 내수시장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표 2-14 03~05'년간 한국의 對中 성(省)별 투자추이

성별	2003		2004		200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길림성	36	13,736	50	14,135	65	37,460
요녕성	187	93,678	221	146,716	268	178,504
북경	115	175,945	196	329,016	204	405,245
천진	138	98,430	162	125,101	211	206,767
산둥성	633	427,475	811	484,205	855	647,049
강소성	166	347,813	226	540,657	196	596,426
상해	107	84,355	128	18,672	161	126,260
절강성	74	113,202	89	94,681	74	110,788
광둥성	62	58,330	86	115,209	64	63,109
복건성	14	9,586	7	4,852	16	6,197
흑룡강성	16	9,456	19	8,168	24	12,34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kr/index.jsp>)
 순투자건수, 순투자금액 기준
 단위: 건, 천 달러

第 3 節 韓·中 通商에 대한 展望

1. 通商環境의 變化

20세기 80년대 이래 세계적인 지역화 경향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개 經濟圈을 형성하였다. 즉 ① EU 중심의 유럽경제권, ② NAFTA 중심의 아메리카경제권, ③ 일본, NIEs, ASEAN, 중국 등을 묶은 아시아경제권으로의 3극구조(3-pole system)의 형성이 그것이다.¹⁶⁾ 최근에는 동북아시아 각국의 지속적인 경제상승과 각국간의 대규모 무역수출입에 따라 동북아시아 경제권이 초보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주요한 국가로서 동북아시아의 지역화 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국경제는 최근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저절로 한·중간의 경제협력의 주도적인 원인이 된다. 한국은 중국의 자원과 시장을 필요로 하므로 각각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현재의 한·중간 무역과 투자의 급속한 발전은 결국 필연적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잠재적인 시장과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가지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기업에게 좋은 투자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협력파트너이고 제일 큰 무역파트너가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기술과 자금이 중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오랜 문화교류와 근접한 지리적 요인도 충분히 중국에 영향을 준다. 한국의 對中 주력 수출제품 중에 화학, 수송기계, 철강금속, 경공업 등 분야가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상품을 많이 필요로 하므로 점점 확대될 추세이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 인접성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서도 양국의 경제협력은 필연적이다.¹⁷⁾ 따라서 한·중간 경제적 의존성이 강화되어 한·중간 광범위한 통상을 유발할

16)李大根, 『韓國貿易論 - 韓國經濟, 先進化의 길』, 法文社, 2002, p.438.

17) 정인교, 『동북아 경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12, pp.26-27.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변 국가들의 시장에 접근해지기 때문에 수출입확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서로 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넓어진다.¹⁸⁾ 그래서 현재의 한·중통상의 현황을 보면 앞으로 양국간의 통상은 지속적으로 확대추세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국의 정치·경제적인 교류에 따라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고 각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심화할 것이다.

2. 向後 展望

한·중간 미래 협력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2005년 한·중 경제 협력 대토론회’(2005韓中經濟合作大論壇)¹⁹⁾에서 중국 상무부장관 보시라이(薄熙來)는 중국시장이 안정된 발전시기인 2004년 국내시장의 소비액이 2조 달러를 초과하였고, GDP 연평균 7.3%의 성장률에 근거하여 보면 2010년까지 국내시장의 소비액이 3조 달러에 달할 것이며, 매년 수입액도 1만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한·중통상의 발전원동력이 되며 두 나라의 무역교류와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고건 전 총리도 수교 이래 급속히 발전해온 한·중 경제는 과거 수직적 분업 관계에서 수평적 경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양국간 우선협력 과제로 에너지와 환경, 운송물류, 금융 분야와 함께 북한핵문제를 제시하였다.²⁰⁾ 또 60%의 한국기업들이 중국 현재의 통상환경에 대하여 만족하며, 앞으로도 해외투자의 대상국을 선택할 때 우선 중국을 선택할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한·중양국 정부와 민간이 다 한중통상의 발전에 대하여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²¹⁾

한·중간의 통상확대는 중국경제가 중장기적으로 7%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한국경제 역시 2010년 2만 달러 시대 진입을 위해 5%내외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함을 전제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의 경제규모를 2000

18) 정인교, 上揭書, p.28.

19) 2005년 6월 16~19일 한국의 '2080 CEO 포럼'과 중국 인민일보가 베이징에서 '한·중 경제토론회 2005 베이징'이라는 심포지엄을 주최하였다. 그때 한국과 중국의 경제인, 학자, 정치인 등 400여명이 참가해서 '한·중 경제협력의 슈퍼 동아시아 시대를 열자'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20) “2005韓中經濟合作大論壇在京舉行”, 人民日報, 2005.06.18.

21) 전국경제인연합회.(<http://www.fki.or.kr/Main.aspx>)

년의 4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매년 7.2%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여야 한다. 양국간 교역환경은 장기에 있어서는 양국에 대하여 경제발전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양국의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률을 유지하고 2004년 교역액이 9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양국의 대외무역중장기연구에 의하면 양국간 교역은 연평균 26.7%의 증가율을 유지하여 2010년 양국간 교역액이 1,500~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국이 對中 투자는 계속 확대되며, 현재 한국기업들의 對中 투자의 80%인 제조업을 점차 서비스무역으로 전환할 것이다.²²⁾

그러나 한·중 경제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에서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간 무역 관련 제도의 차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통상 마찰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특히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 압력과 검역기술·기준 등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갈수록 심해지는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미국, EU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섬유류 분쟁은 무엇보다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²³⁾ 한·중간 가장 큰 시장인 농산물도 미래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한·중 농산물 교역 총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對中 농산물무역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2005년 한국의 對中 농산물 수출액은 3.5억 달러를 달하였으며, 중국에서 농산물 수입액은 28.5억 달러에 달하였다.²⁴⁾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세·비관세장벽으로 중국 농산물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²⁵⁾ 이런 다방면의 문제점에 대해 중국 측은 안정된 통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법률·정책의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005년에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승계로 정치적 입지가 강화된 후진타오 지도체계가 완비되면서 앞으로

22) 무역협회, 『대중국 중장기 교역 전망』, 2004.

23) 2005년 4월 4일 미국 방직물협회의집행위원회(CITA)에서 중국의 3개 품목 방직제품에 특별세이프가드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4월 29일 EU는 중국 9개 품목 방직제품에 특별세이프가드조치를 취했다. 5월 20일 중국은 74 품목 방직 제품의 수출관세를 올렸다. 5월23일 미국은 중국의 4개 품목 방직제품에 쿼터조치를 취했다. 5월 27일 EU는 중국의 티셔츠와 마사에 특별세이프가드조치를 취했다. 5월 30일 중국은 81개 품목 방직제품의 수출관세를 취소했다.(<http://news.ctei.gov.cn/show.asp?xx=54088>)

24) 中國 商務部, 『中國農產物輸出入月別統計』, 2005.

25) 智農, "解讀韓國進口農畜產品管理政策", 『中國畜牧導刊』, 2005.

중국의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²⁶⁾



26)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5년 국별 경제 전망』, p.17.

第 3 章 韓 · 中 通商摩擦의 法的 問題

第 1 節 概說

WTO의 국제통상 규범체계를 확립한 이래 세계 범위 내에서 경제교류와 무역거래가 점차 활발해졌다. 그러나 국제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점점 깊어지고 있으며, 국제통상에 참여하는 쌍방의 이익이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국가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인한 통상마찰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중간의 통상마찰도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양국간 통상의 확대에 따라서 더 많아질 것이 보인다.

일반적으로 통상마찰이란 특정국이 어떤 이유로 통상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했거나 또는 취할 경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상대국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 나라의 특정제품에 대한 상대국 시장진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거래의 불균형이 발생, 또는 확대되거나, 상대국 시장에서 질서의 혼란과 불공정, 실업의 증대 등으로 위기감을 초래할 때, 상대국은 당해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억제 또는 그 나라에 대해 수입확대 및 시장개방 등 대응요구가 나타나는 통상메커니즘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²⁷⁾

국제통상의 보호무역주의와 동태적인 국제통상의 특성 때문에 어느 정도의 통상마찰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통상마찰은 기본적으로 교역이 증가할수록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객관적으로 가장 명백한 원인은 국제통상 내에서 무역수지 불균형이 국가간의 통상마찰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즉 흑자를 보는 국가는 상대국가로부터 國富를 가져오는 것이고, 적자를 보는 국가는 국부가 유출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무역수지 불균형은 각국

27) 박종수, 『국제통상론』, 박영사, 2000, pp.8-9.

의 경제발전정도와 산업구조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시간 내에 지속적으로 존재한다.²⁸⁾

물론 통상마찰의 원인은 위의 것 이외에도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국가내부의 정치상황에 따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 선거의 승리하기 위하여 타국의 당해 집단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 수입제한을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과, 자기 나라 어떤 단체나 협회가 정부에 정치구제를 신청하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요인으로 일으키는 통상마찰은 일반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 사이에 항상 나타나고 있다.²⁹⁾ 한·중간의 경우에는 주로 국제수지불균형과 양국간의 산업구조차이 등의 원인으로 통상마찰을 일으키고 또한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중국의 법률·제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통상마찰과 관련된 중국 지적재산권제도, 원산지규정, 산업피해구제제도, 무역장벽조사조치에 대해 각각 살펴보겠다.

28)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11&dir_id=110106&eid=X5Ucmh9oFN8Q8in+Kc9TPmTgK9ZUV5as&qb=sbm6ziDF67vzuLbC+w==

29) 肖偉, 『國際反傾銷法律与實務-美國卷』, 中國知識產權出版社, 2005.8.1, pp.7-8.

第 2 節 韓 · 中間 貿易不均衡 關聯 通商摩擦

1. 貿易不均衡 現況 및 原因

1) 무역불균형 현황

한·중간 무역불균형은 보통 양국간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말한다. 이것은 양국간의 통상마찰을 발생시킨 제일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수지(國際收支, The balance of payments)란 일정기간 그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모든 경제거래의 체계적인 기록이다.³⁰⁾ 국제수지는 그 나라의 국제적인 지위나 경제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정부당국으로서는 화폐개혁, 재정개혁, 외환정책 및 대외정책 등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유용한 수단이 된다. 또한 국제수지는 국민경제의 대외활동을 반응할 뿐 아니라 경제력의 주요한 지표가 된다. 어느 나라의 국제수지는 무역 및 무역외거래에서 수입초과 현상이 발생되고, 자본 거래 면에서 유출초과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³¹⁾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수출입 물량의 증대와 같이 중국의 국가별 무역수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대상국(지역)인 홍콩과 미국에 대한 흑자규모는 2002년 각각 477억 달러와 427.7억 달러, 2003년 651.9억 달러와 586.3억 달러, 2004년 893.3억 달러와 802.7억 달러의 것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2004년 중·미간 수출입 총액은 1,696.3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일본과의 1,677.3억 달러 교역규모를 넘어섰다. 한편 중국의 주요 무역적자 대상국(지역)인 대만, 한국, 일본과의 적자규모는 2002년 각각 315억 달러, 130.8억 달러, 50억 달러, 2003년 각각 403.5억 달러, 230.5억 달러, 1696.3억 달러를 기

30) 박노경, 『국제수지요약론』,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0.9, p.1.

31) 신세돈, 『국제수지론』, 세창출판사, 1997, pp.3-18.

록하였으며 크게 증가하였다.³²⁾ 중국과 주요 무역대상국간 무역수지 양극화 특히 중·미간 무역수지 불균형의 확대가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정치적인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중간 교역에서 한국의 무역흑자는 꾸준히 증가됨으로써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물론 홍콩의 중계무역 등 원인으로 인한 양국의 통계결과가 불일치하게 되지만 매년 對中 무역흑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은 한국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개선노력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표 3-1 한·중 무역수지 통계 통계차이

년 도	무역수지		차 이
	한국통계	중국통계	
1992	-10.7	-2.2	8.5
1993	12.2	-25.0	12.8
1994	7.4	-29.2	21.8
1995	17.4	-36.0	18.6
1996	28.4	-49.7	21.3
1997	34.6	-87.3	52.7
1998	54.6	-87.9	33.3
1999	48.2	-94.1	45.9
2000	56.6	-119.2	62.6
2001	48.9	-108.5	59.6
2002	63.5	-130.7	67.2
2003	132.0	-234.2	102.2
2004	201.7	-344.3	142.6
2005	232.7	-417.6	184.9

자료: Kotis, 중국 세관 각 년도 통계
단위: 억 달러

32) 中國海關統計.(<http://www.chinacustomsstat.com/customsstat/>)

2) 무역불균형의 원인

(1) 통계불일치

한·중간 무역 특징 중의 하나는 양국이 홍콩을 통해 간접무역의 방식으로 중계무역을 하고 있다. 각국의 수출입 통계는 일반적으로 자국의 원산지규정에 의하여 진행된다. 양국은 마찬가지로 자국의 원산지규정에 의한다. 홍콩의 중계무역을 통해서 중국의 對홍콩 수출제품이 한국으로 재수출을 하는 경우에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바뀌지 않는다. 중국은 이러한 제품의 통계 숫자를 한·중간의 무역수지통계에 더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제품을 수입할 때 원산지표시에 의해 한·중간의 수출입 총액에 더하고 무역수지를 계산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제품이 홍콩의 중계무역을 통해 중국으로 재수출을 하는 경우, 중국은 제품의 원산지표시에 근거하여 한국과의 수출입 총액에 더한다. 한국은 이를 한·홍콩간의 수출입 총액에 더한다. 현재 한국제품이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수출되는 규모가 중국제품이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재수출되는 규모보다 많다. 따라서 이러한 큰 통계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005년 한국의 대홍콩 수출액은 한국통계기준에 의하여 155.3억 달러이고, 홍콩의 對韓 수입액은 홍콩의 수입신고기준에 의하여 118.5억 달러로 나타났다.³³⁾ 한국과 홍콩간의 통계차이가 수출입 통계에서 무역방식의 조건의 차이³⁴⁾, 금(gold)교역 통계 계산방식³⁵⁾ 등의 차이에 기인한다. 따라서 한국의 대홍콩 수출 숫자로 추정해 보면 한·중간의 무역통계 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다.

(2) 직접투자의 증가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규모 확대는 상해(上海),

33) 홍콩공업무역서(工業貿易署).(<http://www.tid.gov.hk/cindex.html>)

34) 한국은 FOB, 홍콩은 CIF의 방법으로 통계한다.

35) 홍콩은 한국과 달리 금교역을 일반 무역통계에 계산하지 않는다.

북경(北京), 산둥(山東), 광둥(廣東) 등의 연해지역(沿海地域)을 중심으로 크게 나타난다. 중국현지법인 직접투자의 한국기업들은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주로 중국 내수시장이나 제3국 시장에 판매함에 따라 한국에서 수입된 원·부자재 금액이 한국으로 수출된 작성제품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중국의 對韓 무역적자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對中 직접투자는 원래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부자재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에서 최종 제품으로 가공된다. 이러한 무역거래 형식이 위탁가공무역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집약적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백색가전과 같은 일정한 기술을 요하는 제품도 있다. 2004년 중국 기업의 가공무역 수출입 총액은 작년보다 39.8% 증가하였고, 4,500.1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중국 가공무역 생산총액의 81.9%를 차지하였다.³⁶⁾

현재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a)에 의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는 물품의 경우 그 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고, 그 제품에 특징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있다.³⁷⁾ 따라서 이러한 제품의 경우 최종 원산지는 중국이 된다. 즉 원래 한국에서 직접 미국과 EU로 수출하였던 제품을 지금은 중국이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 가공해 미국과 EU로 수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원래 한국의 對美·對EU의 무역흑자는 중국의 對美·對EU의 무역흑자로 변하게 되며, 동시에 한국의 對美·對EU의 무역흑자는 현재 한국의 對中 무역흑자로 변하게 된다.³⁸⁾

또한 한국 기업들의 직접투자와 상관없이 광둥 등 지역의 조시 개방에 따른 고도경제성장으로 소비와 투자 등의 수요가 증대되고 한국으로부터 원·부자재, 소비재 등의 수입규모가 커지면서 중국의 對韓 일부무역적자를 가져온다.³⁹⁾

3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한·중 무역 불균형 원인 분석』, 2003.

37) 서헌제, 『국제경제법』, 율곡출판사, 1998, pp.297.

38) 李景台, 『從東亞發展角度看中國對外貿易與外商直接投資』, 中國發展高層論壇, 2005.3.

3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상계서.

(3) 산업구조차이

중국은 시장개방의 확대를 통하여 고도의 공업화로 산업구조를 개변하고 있다. 그 동안 외자기업의 제조 중심으로 인하여 주로 노동집약형 공업화가 진행되어 왔다. 중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진출함에 따라 주로 제조업이 가공업을 노동집약형 공업화로 진전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화가 진전하기 위하여 중화학 공업제품과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등의 기술집약형 공업제품이 대량으로 필요하다. 기술집약형 산업 분야에서 한국 제품은 중국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의 對中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노동집약형 산업은 한국에 대하여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對中의 교역 품목 구조는 전형적인 산업간 분업형태를 보인다. 최근 한국 對中 수출은 중화학 공업제품이 중심이 되어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섬유, 화공제품 순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입은 농수산물, 섬유류, 광산물 등의 품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⁴⁰⁾

품목별 중국의 對韓 무역적자는 중화학 공업제품과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등 주로 2개 분야에 집중된다. 이러한 제품은 한국 對中의 무역 흑자에 기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중국 세관통계에 의하여 2004년 한국은 중화학 공업제품에만 對中 수출이 497.6억 달러를 달하였다.⁴¹⁾

2. 原產地制度 關聯 法制分析

1) 원산지의 의의

원산지 기준이란 국제통상에서 거래되는 특정제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또는 그 제품의 최초의 생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원산지 규정은 상품의 국적을 판정하기 위한 법률과 행정명령에 관한

4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전게서.

41) 中國 商務部, “中國与亞洲主要國家的貿易逆差原因分析”, 2004.9.7.

규정의 총칭이다. 이에 의해 원산지는 그 제품의 ‘경제적 국적’이라고 할 수 있다.⁴²⁾ 국제통상에서 원산지를 확정하는 의의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통상에서 원산지의 확정은 국가가 자국의 관세세칙 목록에 근거하여 수입된 제품에 대해 어떤 대우를 부여하는지를 위한 것이다.

둘째, 수입국이 일부 국가의 제품에 수입제한, 쿼터, 수출입허가증명 등의 비관세적인 제한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제품의 원산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또는 국가가 보복조항이나 기타 원인으로 인한 수출입규제를 진행할 경우에는 제품의 원산지에 근거하여 행할 수밖에 없다.

셋째, 원산지규정의 제정은 국가간의 무역수지를 통계하기 것이다. 현재 거의 모든 국가의 세관이 원산지에 근거하여 수출입에 대해 계산하고, 자국의 대외무역정책을 결정한다. 특히 국가간의 무역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별 무역정책을 수립한다. 그리하여 원산지규정은 국가가 대외무역정책의 수립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⁴³⁾

원산지규정은 제품의 적용범위에 따라 특혜적·비특혜적인 원산지규정으로 나눈다. WTO 「원산지협정」에서는 비특혜적인 원산지규정에 대해 합의하였다. 즉 비특혜적인 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는 최혜국대우,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 원산지표시, 차별적인 쿼터, 정부구매, 그리고 무역통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특혜적인 원산지규정은 당해 국가가 교역상대국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또는 협상을 통해 교역상대국과 서로 적용하는 특혜조치이다. 즉 비특혜적인 원산지규정은 모든 교역상대국(지역)에 적용하며, 특혜적인 원산지규정은 다자간·양자간 협정을 채택한 교역상대국(지역)에 적용한다.⁴⁴⁾

2) 중국의 원산지규정

(1) 입법의 추이

42) 高建華·康玉燕, 『原產地標記-國際貿易中產品的護照』, 中國法制, 2002, p.6.

43) 叶全良·王世春, 『國際商務与原產地規則』, 人民出版社, 2005, p.64.

44) 中國經濟網. (http://finance.ce.cn/macro/mywl/wtogzjx/200606/17/t20060617_7401157.shtml)

최초에 중국은 수출입제품의 원산지를 확정하지 않고 제품의 수출국에 따라 통계를 한다. 1985년에 구별적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중국 세관(海關總署)이 「수입화물원산지잠정규정」⁴⁵⁾을 제정하여 실행하였다. 그러나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은 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 원산지규정과 일치하기 위하여 1992년 「수출화물 원산지규칙」(中華人民共和國出口貨物原產地規則)⁴⁶⁾, 「수출화물 원산지규칙 실시방법」(中華人民共和國出口貨物原產地規則實施辦法)⁴⁷⁾, 「주요공정기준 원산지 판정 제품목록」(含有進口成分出口貨物原產地標準制造,加工工序序清單)⁴⁸⁾ 3개 법규를 제출하여 1992년 5월 1일 실행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세관과 상무부의 행정관리명령에 불과하다. 그래서 2005년 1월 1일 「수입화물 원산지잠정규정」 및 「수출화물 원산지규칙」을 폐지하였고 「중국 수출입화물의 원산지조례」(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貨物原產地條例)⁴⁹⁾를 실행하였다.

(2) 원산지규정의 법적 구조

「중국 수출입화물의 원산지조례」는 총 2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목적, 적용범위, 원산지증서, 법률책임 등에 관한 조문을 두고 있다. 「원산지조례」에 근거하여 최혜국대우,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관세, 원산지표기관리, 국가별 수량제한, 수입쿼터 등의 비특혜적인 조치 및 정부조달, 무역통계 등에 관한 내용이 「원산지조례」에 적용하며, 특혜적인 조치의 경우에는 「원산지조례」에 적용하지 않는다. 특혜적인 조치를 중국의 가입·체결한 국제조약·협정에 따라 관련 부서의 행정명령으로 제정한다.(제2조) 또한 「상표법」(商標法), 「품질관리법」(產品質量法), 「부정경쟁방지법」(反不正當競爭法) 그리고 「소비자보호법」(消費者權益保護法)에 원산지 관련 규정이 있다.

45) 「中華人民共和國海關關於進口貨物原產地的暫行規定」, 1986年 海關總署令 第1218号.

46) 國務院令 第94号.

47) 商務部(原對外經濟貿易部)令 1992年 第1号.

48) 商務部(原對外經濟貿易部)令 1992年 第2号.

49) 國務院令 第416号.

(3) 조례의 내용

「원산지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⁵⁰⁾ 첫째, 완전생산기준(完全生産基準)과 실질적 변형기준(實質的 變形基準) 2가지로 대별한다.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판정할 때 세 번 변경 기준(稅番變更基準)을 우선 이용하며, 세 번 변경 기준은 화물의 실질적 변형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 부가가치기준이나 주요공정기준을 보충적인 기준으로 한다.⁵¹⁾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을 중국세관이 상무부와 중국 질량감독·검사·검역 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과 같이 제정한다.(제3~6조) 둘째, 우회행위가 있는 수입제품을 제3국(지역)에서 변형하더라도 세관이 그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그 변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여기서 우회행위라 함은 보통 수출업자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관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불공정한 무역행위·수단으로 투기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수출업자가 원산지표시를 혼동·오인시키는 행위를 불법적인 행위로 금지하고 추궁하여야 한다.(제16~20조)

(4) 한·중 원산지규정의 비교

한국의 원산지에 관한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시행령」에서 두고 있다. 「대외무역법」에서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지정 및 수입물품의 원산지판정), 제23조 제2항 내지 제3항(원산지 표시방법 지정 및 원산지표시 위반유형 규정), 제23조 제4항 내지 제5항 및 제

50) 王魯文·黃雪芹, “簡論進出口貨物原產地條例”. (http://www.law-lib.com/lw/lw_view.asp?no=4197)

51) 여기서 완전생산기준은 어떤 한 국가에서 생산이 완성되는 특성을 가진 물품에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대개는 농산물이나 광물 등 일차산품에 적용한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는 물품의 경우 그 물품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물품에 특성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稅番變更基準은 물품의 생산과정에 투입된 원재료 또는 부품과 이로부터 생산된 물품간에 세번의 변경이 생긴 경우 그러한 세번변경이 초래된 공정이 행해진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 기준은 특정 공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그 공정이 일어난 곳을 원산지로 보는 기준이다. 주요공정기준은 생산과정상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공정을 파악한 후 가장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변형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공정이 이루어진 장소를 원산지로 하는 것이다.(서헌재, 전계서, pp.297-298)

55조(원산지 표시단속업무 총괄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원산지 관련 규정이 있다.⁵²⁾ 그리고 통관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규정과 국내에서 원산지표시의 유통단속에 관한 규정은 「관세법」·「관세법시행령」에서 두고 있다.⁵³⁾

양국은 완전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형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제품의 원산지에 대해 확정할 경우에 한국은 H.S. 6단위 기준에 따라 제품의 변형정도를 판정하며, 중국은 H.S. 4단위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한다. 한편 부가가치기준은 30%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의 산정은 “ (제품가격 - 비원재료가격 / 제품가격)*100% ”의 공식에 의한다.⁵⁴⁾ 그러나 양국은 방콕협정⁵⁵⁾에 가입했기 때문에 특정제품의 변형은 부가가치(FOB 가격기준)가 45%이상 되거나 H.S. 6단위 기준에 의해 그 제품의 원산지를 별정하게 된다. 양국의 원산지규정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으며, 양국간 통상에 너무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양국은 일단 현행원산지규정을 유지해도 될 것이며, 통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상을 통해 특혜적인 원산지규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小結論

1) 문제점

이론적으로 보면 WTO 「원산지규정협정」은 회원국의 원산지에 관한 법

52) 도중권·라공우, 『최신대외무역법』, 두남출판사, 2004, pp.307-308.

53) 「관세법」 229조 내지 233조에서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54) 제품가격이란 FOB 가격기준으로 산정하는 수출가격을 말하며, 비원재료가격이란 제품의 수입가격, 운송비용, 그리고 보험비용을 말한다.

55)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스리랑카 등 국가들이 가입된 방콕협정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산하 개도국간 특혜무역에 관한 협정으로, 회원국간 무역확대를 통한 유대관계 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은 협정대상국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양허품목을 화학제품, 철강, 금속, 섬유·의류를 중심으로 기존의 285개 품목(H.S. 10단위)에서 1,367개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기존의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1,858(H.S. 8단위)개 품목의 제품은 우대관세를 적용하게 되었으며 특혜원산지 증명을 사용한다. (<http://www.csj.sh.gov.cn/gb/csj/smcsljl/mgxd/jianjie.htm>)

규를 조화할 수 있는 만큼 일치하도록 하였다. 회원국들이 수출입에서 가능한 대로 동일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사용하다면 원산지로부터 인한 국가간의 통상마찰을 틀림없이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실행의 복잡성(複雜性)과 원산지규정의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산지규정의 바탕으로 수립한 각국의 무역정책이 항상 국가간의 통상마찰을 일으킨다.⁵⁶⁾

(1) 원산지규정의 임의성

자국의 최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국이 원산지규정을 제정할 때, 입법의 임의성이 있다. 예를 들면 1996년 미국이 방직물·의료 제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개정한 사례에서 미국은 자국의 방직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다.⁵⁷⁾ 이것은 다른 나라 특히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방직물·의료 제품에 제한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특정 나라(지역)의 단일한 품목제품에 대해 특정한 원산지규정을 설치하고 있다. 방직의료제품, 철강제품 등 비특혜적인 원산지규정에 대하여 각각 특정한 원산지규정을 제정하였다. 제품의 품목에 따라 특정한 원산지규정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각국이 자국의 특정제품원산지규정을 제정한다면 통상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⁵⁸⁾

(2) 통계의 결함성

수입국은 원산지규정에 따라 국가별 수입제품의 원산지, 생산지, 또는 실질적 변형에 걸친 생산지에 대한 통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통 통계의 원칙·방법은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⁵⁹⁾ 특히 중계무역과 가공무역이 있어서 국

56) 王學, “世界貿易組織原產地規則及其貿易影響探析”, 西南民族學院學報, 2000.

57) 1996년 미국이 「무역과 발전 법안」 제405절에서 의료의 원산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E.U.가 당해 개정법안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하였고 WTO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였다.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미국은 입법절차에 따라 그 규정을 개정하였다.

58) 叶全良·王世春, 『國際商務与原產地規則』, 人民出版社, 2005, p.112.

59) 宋明順·耿金鳳, “WTO 原產地規則協議及對世界貿易影響”, 『國際經貿探索』, 2001, p.56.

기간 통계차이가 자주 나타난다. 더구나 현재 생산의 세계화에 따라서 多國籍 기업들이 국제 통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통계는 국가 간 이익배분의 진실한 상황을 분명하게 볼 수 없다.⁶⁰⁾

(3) 우회행위

불공정한 무역행위인 우회행위가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원산지규정은 우회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가격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반덤핑조사에서 정상가격을 판정할 때 수출국 또는 원산국 국내 조산대상 제품의 판매가격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는 조사대상 제품의 수출국이나 원산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된 비교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그러나 각국의 원산지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인 경우 각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같지 않는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또한 각국의 제품에 따라 수입국에서 규정된 대우와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당해 제품의 정상가격 판정에 영향을 초래한다.

둘째, 원산지규정은 우회행위를 유발할 수가 있다. 우회덤핑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수출업자가 제품을 제3국을 경유하거나 제3국에서 간단하게 가공·조립한 후 수입국으로 수출한다. ② 수출업자가 먼저 덤핑제품의 부품을 수입국으로 수출한 후에, 수출국에서 간단하게 가공·조립을 하여 생산된 제품을 현지에서 판매한다. ①의 경우를 보면 수입국이 반덤핑관세부과 제품 여부를 판정할 때, 원산지규정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해 제품의 원산국은 반덤핑관세부

60) 미국은 중·미간 심각한 무역불균형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1996년 9월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os Angeles Times)에서 바비(barbie)인형 및 세계경제라는 보고서를 실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바비인형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사례로 제품의 이익배분에 대해 분석하였다. 즉 바비인형은 1개 미국시장에서 9.99달러로 파는데 중국에서 수입한 가격은 2달러이다. 나머지 7.99달러는 운송, 광고, 상가이윤 등의 미국 국내 업체로 배분된다. 중국에 지급된 2달러 중에 勞務 코스트(cost)는 35센트이고 재료비는 65센트이고 운송·관리비용은 1달러이다. 그리고 65센트의 재료비에는 바비인형의 몸을 만들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에서 생산한 석유를 미국으로 수출해서 에틸렌(ethylene)을 정련한 후 대만에서 에틸렌으로 비닐기(vinyl基)의 플라스틱 알을 작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본은 나일론(nylon)으로 바비인형의 머리카락을 만들고 미국은 포장용 종이 상자를 제공한다. 그러나 미국은 원산지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당해 제품을 수입한 통계데이터에 2달러의 가격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원산지규정에 따른 통계 데이터는 중·미간 실질적인 무역불균형을 반영하지 못한다.

과 대상국인지 아닌지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회는 원산지규정을 이용하므로 수입국의 규제조치를 회피하는 것이다. 특정 제품이 반덤핑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당연히 징수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여러 국가들이 우선 반덤핑부과대상 제품을 제3국을 경유하여 덤핑조치를 실시한 국가로 수출한다. 심지어 제3국에서 직접투자를 통해 반덤핑관세를 회피한다.

2) 해결방안

양국간 수출입 통계결과의 불일치에 중국 측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현황에 정확하게 인식하고 협동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국은 홍콩자치정부와 협력하여 수출입 통계의 데이터를 공유하여, 한·중간 수출입의 상황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중간 통상현안뿐만 아니라 중국은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에 대해 홍콩의 중계무역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홍콩은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기 때문에 중국은 홍콩과 같이 무역통계를 하는 것이 어렵게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홍콩의 중계무역으로 수출입의 데이터를 계산하고, 한국과 같이 통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중간 무역통계 불일치의 현안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산지규정은 한·중 통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이 원산지규정을 최대한 정도 국제 원산지협정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국의 원산지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규범에 참조하고 원산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규와 절차를 제정한다. 둘째, 양국이 원산지표시를 보호하는 법률·명령을 완벽하게 하고, 준법을 강화한다. 셋째, 특혜원산지규정을 통해 한·중간의 통상을 확대한다. 양국이 이미 방콕협정(ESCAP)⁶¹⁾에 가입한 것이 양국간의 통상에 적극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넷

61)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of Asia and Pacific)는 개도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상에서 협의되었으며, 관세특혜 공여협정을 1976년 6월에 발효시켰다. 일반적으로 방콕협정으로 불리는 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유일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서 최혜국 대우의

째, 서비스무역에 관한 원산지규정을 제정한다. 현재 서비스무역은 세계경제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화물무역과 다르기 때문에 양국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원산지규정을 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원산지규정을 제정하면 한·중간의 서비스무역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원칙이 지배하는 WTO체제하에서 회원국간 공공연히 특혜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무역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회원국가간의 무역에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보다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협정내용의 골자이다. 회원국은 한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중국 등 6개국이 있다.

第 3 節 知的財産權 關聯 通商摩擦

1. 知的財産權 關聯 通商摩擦 現況

한·중 양국 지적재산권제도는 선진국의 법률제도를 모방하여 제정된 것이 대부분이다. 양국의 지적재산권법은 자유 시장경제질서 내에서 배타적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이행으로 양국의 정보와 기술에 대한 보호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특히 특허 및 상표권분야에서 분쟁이 항상 나타난다.⁶²⁾ 지금까지 양국의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들 가운데에서 특허, 상표에 관한 사례들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상표국(商標局)에 한국 기업의 상호나 상표를 먼저 등록한 것이다. 현대 자동차 회사가 중국에 진입했을 때 회사의 상표가 이미 타인에 의해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⁶³⁾ 둘째, 전형적인 상표권이 침해된 것이다. 벨금속공업(주)은 2003년 봄 중국 불산(佛山)에 자사제품의 위조품을 발견하였다. 2003년 7월 불산 품질기술감독국에서 중국 불법회사에 대한 행정처벌서를 받았다.⁶⁴⁾ 셋째, 전형적인 디자인권이 침해된 것이다. 한국의 중소기업 ZALMAN는 새로운 개념의 CPU 쿨러를 개발하였는데 중국 제조사는 모조품을 제조하였다. ZALMAN사는 광둥성(廣東省) 선전시(深圳市) 중급인민법원에 디자인권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고, 2004년 8월에 승소하였다.⁶⁵⁾ 넷째, 상호가 침해된 것이다. 1999년 한국의 한신기계공업 주식회사는 중국巨星기계공업회사가 “HANSHIN” 상호를 이용하였으므로 제소하였다.⁶⁶⁾ 다섯째, 기술을 유출된 것이다. 한국의 칫솔살균기 개발업체가 2003년 수출을 제외한 중국의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CH일렉트로닉으로부터 중국강제인증(CCC)을 따는

62) 叶全良·王世春, 『國際商務与知識產權保護』, 人民出版社, 2005, p.138.

63)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제협력과, 『중국지적재산권』, 2005.6, p.37.

64)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제협력과, 상계서, p.37.

65)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제협력과, 상계서, p.38.

66)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제협력과, 상계서, p.39.

데 필요한 기술과 제품정보를 요구받고 이를 제공하였다. CH일렉트로릭은 이 기술·제품정보를 이용해 동일한 칫솔살균기를 생산하고 일본으로 판매하였다.⁶⁷⁾ 여섯째, 도메인 이름이 선점된 것이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메인에는 “.cn”이 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외국의 수많은 상호 및 상표사 도메인이름으로 도용되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⁶⁸⁾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입법이 다른 유형의 입법과 달리 비교적 늦게 시작된 낙후성에 비해 오늘날 가장 빨리 그 내용을 늘려왔고 체계화를 이루고 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꾸준한 제정 및 정비를 통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구제하도록 하는 법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되었고 그 체계는 TRIPs에 의하면 비교적 완벽하다.⁶⁹⁾ 그러나 중국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적재산권 법 체계가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적 보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가 낮은 탓에 아직까지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그 침해의 대상도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商號權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있다. 특히 음반과 영상물 대부분이 정품이 아닌 불법 모방품·해적판이 유통되어 지적재산권의 실질적 보호가 심한 상태이다.⁷⁰⁾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앞으로 거의 모든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갈 때 지적재산권보호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중간의 지적재산권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한·중간 통상마찰에 대한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아래에서는 중국 지적재산권의 법률제도에 대해서 고찰하고, 한·중간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적 문제점과 대응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67) 특허청, 『효과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10가지 전략』, 2004.

68)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제협력과, 전개서, pp.40.

69) 叶全良·王世春, 『國際商務与知識產權保護』, 人民出版社, 2005, p.23.

70) 문혜주,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진전”, 과학기술부, 2005,7, p.9.

2. 知的財産權 關聯 法制分析

1) 중국 지적재산권제도의 연혁

중국 최초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은 1982년 제정된 상표법이다. 이후에 특허법과 저작권법을 공포함으로써 지적재산권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는 문제점과 결함이 많아서 세계 지적재산권제도와 비교해 볼 때, 지적재산권제도는 국제적·국내적 경제발전에도 적용되지도 않았고, 입법도 낙후되어 있는 상태였다.

WTO에 가입하기 위해 국제규범과 선진국 법률을 모방하고 원래 법률을 정비하여 새로운 지적재산권제도를 제정하였다. 중국 공산당 제11차 삼중전회(三中全會) 이래 “대내개혁, 대외개방”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는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경제 및 문화 교류가 증가하게 되었고, 1980년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 가입하였고, 지적재산권에 관한 많은 쌍무협정을 체결하였다.

현재 지적재산권법을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협정은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등장한 「무역과 관련한 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이다. 2000년부터 중국은 적극적으로 지적재산권제도를 TRIPs의 규정에 일치되도록 「특허법」, 「상표법」 그리고 「저작권법」에 대하여 개정하였다.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표3-3과 같다.⁷¹⁾

또한 2004년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법률을 참고하여, 새로 개정한 「대외무역법」에서 ‘대외무역에 관한 지적재산권보호’라는 새로운 章⁷²⁾을 신설하였다. 즉 외국 지적재산권 수입제품에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수출입 국내외제품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71) 이해완, “중국 저작권법 개관”, (<http://www.sol-law.net/>)

72) 「대외무역법」 제5장 제29-31조.

관한 법률체계의 틀은 이미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약간 지방의 행정 규정과 TRIPs의 규정간 차이가 있다.

표 3-3 중국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규의 개정요약

	법률·행정규칙·부서규정	실시날짜
법 률 · 행 정 규 칙	저작권법	WTO가입시
	저작권법실시조례	WTO가입시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WTO가입시
	상표법	WTO가입시
	상표법실시규칙	WTO가입시
	식물신품종보호조례	1997.10.1
	불공정경쟁방지법	1993.12.1
	중국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	2001.10.10
부 서 규 정	농업·목축업·어업에 관한 특허관리의 규정(關於農業、畜牧業和漁業專利管理的暫行規定)	WTO가입시 폐지
	서적·간행물 지적재산권의 보호 잠정조례에 대한 통지(關於《圖書、期刊版權保護試行條例》的通知)	WTO가입시 폐지
	서적·간행물 지적재산권의 보호 잠정조례실시규칙 및 서적 원고 모집 요강 및 출판계약에 관한 통지(關於發布《圖書、期刊版權保護試行條例實施細則》和《圖書約稿合同》、《出版合同》的通知)	WTO가입시 폐지
	서적·간행물 지적재산권의 보호 잠정조례의 제15조 제4항에 관한 해석(關於《圖書、期刊版權保護試行條例》第15條第4款的解釋)	WTO가입시 폐지

자료: 中國加入工作組報告書(<http://www.chinalawinfo.com/index.asp>)

2) 통상 관련 지적재산권 법적 구조

중국지적재산권 주관기관의 법률·정책 공개정보⁷³⁾에 따라 중국 지적재산권 제도체계에는 「민법통칙」을 일반법으로 삼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특허

73) 중국 지적재산권국 (中華人民共和國國家知識產權局). (<http://www.sipo.gov.cn/sipo/flfg/>)

법」, 「상표법」 그리고 「저작권법」이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조례·실시규칙 등⁷⁴⁾도 제정되었다. 그밖에 지적재산권제도는 농산물, 集積回路 배치설계 등의 특별한 분야에서도 법률·조례·부서규정의 법적 형식을 규정하고 있다.⁷⁵⁾ 더구나 중국 인민법원에서 이에 관한 司法解釋은 중국 지적재산권 제도 체계를 완벽하게 보완하고 있다.⁷⁶⁾

통상 관련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중국이 국제무역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대외무역법」 제5장은 중국 통상지적재산권제도의 일반법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 이외에 중국은 「불공정경쟁방지법」(反不正當競爭法), 「계약법」(合同法) 등에서도 통상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각각 두고 있다.⁷⁷⁾ 이에 따라서 중국 통상에 관련한 지적재산권제도는 중국 내 여러 가지 법규에 포함되어 있는데 통상 분쟁이 나타날 경우 관련 지적재산권제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것이다. 아래에 중국 통상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제도를 대략적으로 살펴본다.

(1) 민법통칙

중국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반법이 민법통칙⁷⁸⁾이다. 이 민법통칙은 지적재산권의 유형을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발견권, 발명권, 기타 과학성과권(科學成果權) 등 여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발명특허(發明專利), 실용신안특허(實用新型專利), 의장특허(外觀設計專利)는 특허권에 속하고, 과학기

74) 「특허법실시규칙」(2001.6.15), 「특허대리조례」(1991.3.4), 「상표법실시조례」(2002.8.3), 「특수표지관리조례」(1996.7.13), 「저작권법실시조례」(2002.8.2),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2001.12.20), 「저작권단체관리조례」(2004.12.28), 「출판관리조례」(2001.12.25), 「영화에 대한 관리조례」(2001.12.25), 「음반제품 관리조례」(2001.12.25).

75) 「식물 새품종 보호조례」(植物新品種保護條例), 「집적회로 배치설계보호조례」(集成電路布圖設計保護條例), 「집적회로 배치설계보호조례실시세칙」(集成電路布圖設計保護條例實施細則) 등이 있다.

76) 「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植物新品種糾紛案件若干問題的解釋」, 「最高人民法院關於開展植物新品種糾紛案件審判工作的通知」가 있다.

77) 중국의 「불공정경쟁방지법」 제5조, 제10조, 「계약법」 제43조, 제322-364조.

78) 현행 「민법통칙」 1984년 4월 12일 중국 제6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었고 1986년 4월 12일 중국 제37호 대통령(主席令)령으로 공포되었고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술진보, 합리화 건의와 기술개선은 기타 과학성과권(科學成果權)에 포함된다.

「민법통칙」 제5장 제3절 제94~97조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사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장 제118조에서 지적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사인(私人)과 법인은 여섯 가지 종류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사인(私人)·법인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등의 권리가 표절, 개작, 가짜 제품 제조 등의 방법으로 침해되었을 때에는 당사자가 그 침해행위를 멈추어 그로 인한 결과를 제거하는 것을 주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은 민사경제 법률관계에 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는데, 이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관련법규

①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1990년 제정되어, 그 이듬해인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저작권 법률체계 확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후 「문화적, 예술적 저작물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제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s)에 각각 가입하였다.

「저작권법」이 국내 상황에 적용되지 않고 네트워크 등 새로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2001년 10월 27일 중국은 WTO 회원국이 된 2주일 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TRIPs의 이행사항을 다수 반영한 현행 저작권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수반하여 「저작권법실시조례」(著作權法實施條例),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計算機軟件保護條例), 「음반제품관리조례」(音像制品管理條例), 「음반제품 출판관리규정」(音像制品出版管理規定) 등 다수의 법규가 개정되었다. 「저작권법」에서 개정된 부분은 아홉 가

지로 외국인에 대한 ‘超國民待遇’, 보호대상에 대한 조정, 저작권권리에 대한 정의해석, 저작권 권한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 저작권단체관리제도의 설립, 著作隣接權에 대한 보완,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강화, 저작재산권에 대한 세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이다. 이 아홉 가지는 TRIPs의 조문과 가깝게 개정되었다.

② 특허법

중국 「특허법」(專利法)⁷⁹⁾은 1984년 제정되어, 1985년 1월 1일부터 실행되었고, 1992년에 일부 개정된 적이 있다. 90년대 이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허제도의 중요성은 국제통상에서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이 첨단기술로 시장을 독점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중국은 TRIPs에서 규정한 특허에 대한 최저기준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에서는 2000년 8월 25일 ‘특허법개정에 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또한 「특허법」 총 69개 조문 가운데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개정을 진행하였다. 개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특허권신청의 범위를 확대하며, (나) 국유기업에 특허소유권을 부여하며, (다) 특허권 침해를 미리 예방하며, (라) 침해 배상의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하며, (마) 특허권에 관한 분쟁을 조화하며 (바) 특허신청자에게 더 큰 소송권리를 부여하며, (사) 행정의 기속행위·재량행위를 구속하여 특허권보호를 강화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③ 상표법

「상표법」은 1982년 중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된 지적재산권법이며, 1993년에 첫 번째를 개정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특허법」과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TRIPs의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해 「상표법」을 2001년 10월 27일 두 번째로 개정하게 되었다. 중국이 TRIPs의 요구에 따라 개정상표법에서 상표의 구성요소 및 상표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명품 상표 및 지리표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⁸⁰⁾

79) 「특허법」에서 발명특허(發明專利), 실용신안(實用新型), 의장(外觀設計)을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3) 대외무역법상의 지적재산권보호

2004년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였는데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제5장을 신설하였다. 제5장에서 중국이 법률·행정규칙에 의하여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가 통상법체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수입 제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주관기관이 일정한 기간에 그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서 국내시장으로의 진입을 막아 국내 지적재산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소유자가 허가계약에서 강제적인 행위가 있으면 주관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행위로부터의 피해를 해제할 수 있다. 이는 TRIPs에서 강제실시규정⁸⁰⁾과 일치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 중 다른 지적재산권제도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특징은 국민들이 외국에서 지적재산권의 내국민대우와 보호를 받기 위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즉 어떤 나라가 중국제품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거나 지적재산권의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중국 관련기관이 국제협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反不正當競爭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1993년 12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이후 다양한 각종 불공정경쟁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약간의 행정규칙을 공포하였다.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불공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사기성 거래행위(제5조), 독점적 지위의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이 공정경쟁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제한적 경쟁행위(제6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제10조), 허위

80) 叶全良·王世春, 『國際商務與知識產權保護』, 人民出版社, 2005, pp.264-289.

81) 지적재산권자의 허락없이 강제적으로 특허를 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일종의 제약이다.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제31조)

선전행위(제9조) 등 다양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⁸²⁾ 그 중에는 사기성 거래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국내적·국제적 통상에서 금지되어 있다.

(5)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知識產權海關保護條例)⁸³⁾는 2003년 11월 26일 공포되었고, 2004년 3월 1일 시행하여 왔다. 중국은 당해 조례에 따라 대외무역에 함여 있어서 세관총서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등록을 함으로써 수출입 화물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이것은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대책의 일환이다. 즉 지적재산권보호를 등록한 데이터를 중국 각 지역의 세관에 전달함으로써 중국 전역에 지적재산권보호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이다. 그리고 통관할 경우 세관이 지적재산권 침해혐의가 있는 제품을 처리할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혐의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세관에 수출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침해가 확인된 경우에 당사자는 조례에 따라 법률책임을 진다. 따라서 중국이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를 통해서 통관의 일환으로 지적재산권, 특히 국내 제품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3) 통상 관련 지적재산권의 주관기관

중국 지적재산권법제도의 구조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각각 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기관은 크게 여섯 기관으로 나뉜다. 즉 지적재산권국(國家知識產權局), 공업·상업행정관리총국 상표국(國家工商行政管理局商標局), 저작권국(國家版權局), 세관(海關總署), 임업국식물신품종보호관공실(國家林業局植物新品種保護辦公室), 농업부식물신품종보호관공실(農業

82)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제협력과, 전게서, p.141.

83) 國務院令 第395号.

部植物新品种保護辦公室)이다.

그러나 국제 통상거래에서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감독·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요기관은 지적재산권보호 업무팀판공실(國家保護知識產權工作組辦公室)과 세관이 있다. 지적재산권보호 업무팀판공실은 중국 상무부 산하의 기구이며 주요기능이 다음과 같다. ① 전국범위에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계획·제안을 제출한다. ② 중대한 지적재산권 사건을 처리한다. ③ 국민 지적재산권 보호의 의식을 향상시킨다. ④ 외국 투자기업들과 교류·조화제도를 제정하여 집행한다. ⑤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국제교류에 참여한다.⁸⁴⁾

중국 세관은 법과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물론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건이 생기면 세관과 지적재산권보호 업무팀판공실은 그 사건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주관기관과 통지·소집하고 같이 협력하여 처리할 것이다. 한편 지적재산권에 대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구제방법으로는 크게 공상행정 관리국(工商行政管理總局)이나 지적재산권국(知識產權局)을 통한 행정적 구제와 인민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를 들 수 있다.

3. 小結論

1) 문제점

(1) 특허권

「특허법」에 따라 특허신청은 우선신청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즉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인 혹은 2인 이상이 특허신청을 했을 때 특허권은 먼저 신청한 사람의 소유로 인정한다. 이와 같은 특허신청 절차에 따라 한국에 출원한 후 일정기간 내에 중국에 출원하면 한국에 출원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출원한 후 6개월 또는 12개월 후 중국에 출원하면 한국에 그 출원이 공개되거나 공고되어 출판물에 게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84) <http://ipr.mofcom.gov.cn/index.shtml>

특허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된 특허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되었을 경우, 중국 국내에서의 사용공개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⁸⁵⁾

현재 중국 기업들이 특허권을 빠르게 신청하고 있다. 한국기업도 중국기업들로부터 기술도용 등의 침해행위를 당하고 있어서 특허권을 미리 등록하여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 중국의 행정기관과 법원을 통해 행정·사법의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다음에 취할 일이다.

(2) 상표권

「상표법」은 우선 신청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상표등록 가능 구성요소 및 상표등록 불가능 구성요소, 신청인 자격, 위탁대리제도 등은 한국 「상표법」과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중국 상표 및 특허 등록과 기타 국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부분 국가에서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국내사건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련 사건도 모두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와 달리 외국인의 상표 및 특허의 출원이나 외국인 관련사건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지정하는 대리기관만이 취급할 수 있도록 법규화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출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의 섭외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게다가 한국기업들이 중국에서 상표를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중국 商標局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는지를 관리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둘째, 만약 규정에 위반하여 상표를 사용할 때는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등록상표의 정당하지 못한 사용에 대해서는 누구나 상표국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상표국으로 하여금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⁸⁶⁾

85) 특허청,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2005, p.13.

86)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제협력과, 전계서, p.32.

(3) 영업 비밀보호

통상에서 기업들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업금지의무(競業禁止義務)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상법에서 경업금지의무라 함은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영업자의 영업과 경쟁이 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의무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업금지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상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설립된 한국기업들은 기밀유지 또는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보통 기업과 직원 사이에 경업금지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다. 왜냐하면 중국이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을 지금까지 제정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회사법」, 「불공정경쟁방지법」 그리고 약간 부서명령에서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다. 「회사법」 제61조에서 이사와 지배인에 대해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불공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서 상업상 기밀의 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이 상세하지 않고 실무적일 때에는 문제가 항상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경업금지의무 관련 입법을 되도록 빨리 시작해야 한다.⁸⁷⁾

(4) 지방보호주의

지방보호주의가 지적재산권침해에서 문제점의 하나로서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보호주의는 구체적으로 지방행정기관 관리자의 지식이 부족하고, 당해 지역 내에 관련 산업의 이익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심지어 지적재산권침해상품의 제조업자에게 내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이 한국정부와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지만 향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보여진다.⁸⁸⁾

87) 叶全良·王世春, 『國際商務与知識產權保護』, 人民出版社, 2005, pp.314-315.

88) 이춘삼, 『중국통상법』, 大旺社, 2004.11, p.409.

2) 해결방안

중국 지적재산권법체계는 비교적 완비되어 있다. 그러나 준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중국은 지적재산권보호의 준법을 강화하고 행정의 공정성, 법률의 투명성, 사법의 역할을 통하여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해 한·중간 지적재산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또한 지적재산권교역이 발전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한국자본을 유치하고 양국통상이 활발하게 촉진될 것이다.

지적재산권보호는 중·미간 통상마찰 중의 하나로 문제가 되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1991년, 1994년, 1996년 3번이 걸쳐 스페셜 301조사를 발동하였다.⁸⁹⁾ 최종적으로 양국은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협의를 달성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였다. 그와 같이 한·중 양국의 경우에 서로 제재와 보복조치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양국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준법을 강화하면서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를 높이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홍보하여, 지적재산권보호의 분위기가 형성되게 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중개업⁹⁰⁾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활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중간 지적재산권 관련 통상마찰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의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의하고자 한다. ① 양국의 사전 협상 방식으로 전문법정이 설치되어 지적재산권분쟁을 해결한다. ② 양국 지적재산권 주관기관간 특허검색과 기술정보심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③ 양국은 지적재산권침해에 관한 정보공유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한다.

89) http://info.finance.hc360.com/zt/ztjmdt_zmmy_zscq/index.shtml

90) 지적재산권 중계기구는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대리기구, 자산평가기구, 기술거래중계기구, 변호사사무소 등이 있다.

第 4 節 産業被害救濟制度 關聯 通商摩擦

1. 産業被害救濟制度 關聯 通商摩擦 現況

산업피해구제제도는 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꾀하고,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제도이다.⁹¹⁾ 여기서 불공정한 무역행위는 교역상대국에서 私的 경영자의 통상행위로부터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다.⁹²⁾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제품교역분야와 서비스교역분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에는 덤핑방지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세이프가드조치가 있고, 후자에는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일방적인 수입규제조치가 아니라 WTO에서 제출한 협정에 의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산업피해구제제도는 국내 산업 피해의 보호적인 장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세이프가드조치는 또 비관세무역장벽조치라고 한다.

현재 세계 범위 내에서 산업피해구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특히 후진국들도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으며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후진국은 선진국보다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있다. 한·중 양국도 모두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통상의 경험에서 보면 국가간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남용하기 때문에 통상마찰·무역보복이 늘 초래된다. 물론 산업피해구제제도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며 법적 공정성·투명성도 부족하다. 근년 한·중간 반덤핑조치, 세이프가드조치를 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통상마찰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91) 이은섭, 『대외무역법』, 법경사, 2002,2, pp.283-302.

92) 서헌제, 전게서, p.466.

표 3-4 중국의 對韓 반덤핑 수입규제 현황

순번	조사품목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판정내용
1	신문용지	1997.12	1998.7	1999.6	55~78%(5년 연장)
2	폴리에스테르필름	1999.4	1999.12	2000.8	13~46%, 일몰제임
3	스테인리스냉연강관	1999.6	2000.4	2000.12	6~58%
4	폴리우레탄발포제 (염화메틸렌)	2000.12	2001.8	2002.6	4~28%
5	폴리스틸렌	2001.2	-	무피해종결	
6	라이신	2001.6	-	무피해종결	
7	폴리에스터 칩	2001.8	2002.10	2003.2	5~58%
8	폴리에스터단섬유	2001.8	2002.10	2003.2	2~48%
9	아크릴산 에스테르	2001.10	2002.12	2003.4	2~20%
10	아트지(동판지)	2002.6	2002.11	2003.8	4~71% (조사 기간 6개월 연장)
11	무수프탈산(PA)	2002.3	2003.1	2003.9	0~66% (조사 기간 6개월 연장)
12	합성고무(SBR)	2002.3	2003.4	2003.9	0~38% (조사 기간 6개월 연장)
13	냉연강관	2002.3	2003.5	2003.9	0~55%(2004.9.10부터 반 덤핑 세율 부과 중지)
14	PVC	2002.3	2003.5	2003.9	6~84%
15	TDI	2002.5	2003.6	2003.11	3~49%
16	페놀	2002.8	2003.6	2004.4	3~144%
17	MDI	2002.9	-	2003.11	중국업체 조사신청 철회
18	클로로포름	2003.5	2004.4	2004.5	16~96% (조사 기간 6개월 연장)
19	광섬유	2003.7	2004.6	2005.1	7~46%
20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2003.12	2004.8	2005.6	KOC 28%, 기타 한국업체 184%
21	골판지	2004.3	2005.5	2005.9	11.0~65.2%(2001.1중지)
22	비스페놀A	2004.5	-	2005.11	중국업체 조사신청 철회
23	EPDM	2004.8	2005.11	2006.1	중국업체 조사신청 철회
24	핵감산류 식품첨가제	2004.11	2005.8	2006.5	25~119%
25	에폭시염소프로판	2004.12	2005.9	2006.6	3.8~71.5%
26	폴리우레탄 스판덱스	2005.4	2006.5	2006.10	2.31~61%
27	옥탄올	2005.9			진행 중
28	BPA(Bisphenol-A)	2006.8			진행 중

자료: 중국 상무부(<http://cacs.mofcom.gov.cn/>)⁹³⁾

93) 金汝善, “中國의 對韓 反덤핑 規制에 대한 對應理論開發에 관한 研究”, 『成均館法學』 제17권 제1호, 比較法研究所, 2005, p.465.

중국 최초의 對韓 반덤핑조사 제소한 이래 발동한 조사가 총 41건 있었다. 조사대상이 된 국가는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이 있다. 한국은 중국의 반덤핑 규제중 21건, 조사중 3건, 종결 4건 등 모두 28건으로 부과대상국 중 최다를 기록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주로 화학, 철강 등 한국의 주력 대중 수출업종에서 이루어졌다. 반덤핑 규제 품목의 대중 수출액을 보면 년 1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반덤핑관세부과율을 보면 최대 144%, 최저 2%로써 다른 국가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미미한데 이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라고 보여진다.⁹⁴⁾

한편으로 한국의 對中 반덤핑규제는 1991년부터 중국산의 인산(磷酸)에 대하여 덤핑조사를 개시하여, 1993년 40.46%-54.28%의 덤핑관세를 부과한 이래 2006년 6월까지 총 36건의 반덤핑제소가 있었다. 현재 한국이 중국산 7품목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⁹⁵⁾

양국이 국제통상 WTO협정 규범체계하의 허용된 반덤핑관세부과,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빈번하게 사용해서 현재 양국간 교역 각 분야에서 발생한 통상마찰의 국면을 초래하였다. 앞으로 한·중 통상마찰이 더 심할 추세이므로 한·중 무역의 지속적인 확대 발전을 위해 양국정부가 적당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産業被害救濟 關聯 法制分析

1) 대외무역법

(1) 개설

중국의 경제성장은 대외무역에 의존한 바 크다. 대외무역이 중국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⁹⁶⁾ 이와 같이 대외무역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94) 金汝善, “中國의 對韓 反덤핑 規制에 대한 對應理論開發에 관한 研究”, 『成均館法學』 제17권 제2호, 比較法研究所, 2005, p.466.

95) 무역위원회, “우리나라의 제소현황(2006.6 기준)”, 2006.7.

을 감안한다면 수출입을 중심으로 한·중 통상 확대를 위해 수출입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대외무역법」은 한·중 통상 확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외무역법」은 1994년 5월 12일 제8기 중국 제10차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第十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七次會議)에 채택되었고, 2004년 4월 6일 제10기 중국 제10차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第十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八次會議)에 개정하여 통과되었고 중국 주석령(主席令) 제15호(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第十五號)에 의하여 2004년 7월 1일 施行된 것이다. 「대외무역법」은 중국개혁·개방 이래 대외무역체제 개혁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 교훈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향후 국내 대외무역법률을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기초 역할을 하고 있다.

대외무역 관련 법체체계는 「대외무역법」이 기본법이며,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관리에 관한 각종 조례·규정·방법·통지 등이 있다. 대외무역법은 각국 「대외무역법」과 마찬가지로 WTO 규범 체계하 자유무역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은 총칙, 대외무역 경영자, 화물 수출입과 기술 수출입, 국제 서비스 무역, 대외무역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보호, 대외무역 질서, 대외무역 조사, 대외무역 구제, 대외무역 촉진, 법률책임과 부칙 총 11장 70조로 구성되어 있다.

(2) 산업피해구제제도 관련 내용

「대외무역법」 제8장⁹⁶⁾에서 대외무역구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기타 국가(지역)의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방식을 통하여 국내시장에 진입하여 이미 육성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거나 실질적인 피해위협 혹은 이미 육성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장애를 야기할 경우, 국가는 반덤핑조치를 통해 이런 피해, 피해위협,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반덤핑조치

96) 2005년으로 보면 중국 대외무역 총액은 14221억 달러에 달하였고 GDP는 22257억 달러에 달하였다. 대외무역은 GDP의 63.9%를 차지하였다.

97) 「대외무역법」 제40-50조.

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제41조) 둘째, 수입제품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형식이든지 수출국(지역)의 보조금을 받고, 이미 육성된 국내산업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나 실질적인 피해위험을 초래하여, 혹은 이미 육성된 관련 국내산업에 대해 실질적인 장애를 야기할 경우에, 국가는 상계관세조치를 취하여 이런 피해, 피해위험,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조금 및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제43조) 셋째, 수입제품수량의 대폭적인 증가로 동종상품·직접 경쟁제품의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험을 초래할 경우, 국가는 필요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여 이런 피해 또는 피해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피해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4조) 그리고 제3국의 수입규제로 어떤 품목의 제품수입량이 중국으로 대량적으로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피해 또는 피해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내산업에 장애를 야기한 경우, 국가는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하여 동종상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제46조)⁹⁸⁾

2) 반덤핑조치

(1) 반덤핑조치 법적구조와 운용체계

① 반덤핑조치 법적 구조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그리고 세이프가드조치는 모두 수입국의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WTO 규범 체제하 합법적인 산업피해구제제도라는 조치이다. 중국은 WTO 가입이후 관련 법률을 WTO 규범에 부합되게 개정하였다. 특히 산업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개정은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다.

1997년 3월에 총 6장 42개 조문으로 된 「반덤핑과 상계관세조례」(反傾銷, 反補貼條例)를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조례에는 사법심사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법률 투명성도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2001년 11월에 중국이 반덤

98) 沈四宝·陳衛東, “關注我國保障措施法律規定新變化”, 國際經濟法網.
(<http://www.intereconomiclaw.com>)

핑과 상계관세조례를 폐지하고 총 6장 59조로 구성된 「반덤핑조례」(反傾銷條例) 제정하여 시행하였다⁹⁹⁾. 후에 2004년 6월에 반덤핑조례에 대해 6장 58조로 개정하여 200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은 상무부가 규칙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반덤핑조례」와 관련된 규칙은 총 13개¹⁰⁰⁾가 있다. 그리고 반덤핑에 관한 최고 인민법원에서 발포한 법률해석 즉 「반덤핑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문제의 규정」(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反傾銷行政案件應用法律若干問題的規定)¹⁰¹⁾이 있다.

② 운용체계

(가) 운용기관

반덤핑조치를 운영하는 주관기관은 주로 상무부(商務部), 관세세칙위원회(關稅稅則委員會) 그리고 세관(海關總署)이 있다. 반덤핑조사는 덤핑조사와 피해조사로 나누어 진행된다. 상무부 산하의 수출입공평무역국(輸出入公平貿易局)¹⁰²⁾은 덤핑조사를 진행하며, 산업피해 조사국(產業損害調查局)¹⁰³⁾은 국무원

99) 國務院令 第328号.

100) 「반덤핑 산업피해조사 규정」(反傾銷產業損害調查規定), 「반덤핑조사 청문회 임시규칙」(反傾銷調查聽證會暫行規則), 「반덤핑조사 결정 임시규칙」(反傾銷調查立案暫行規則), 「반덤핑 조사 공개자료 열람 임시규칙」(反傾銷調查公開信息查閱暫行規則), 「반덤핑 설문 조사 임시규칙」(反傾銷問卷調查暫行規則), 「반덤핑 표본 조사 임시규칙」(反傾銷調查抽樣暫行規則), 「반덤핑 조사 정보 공개 임시규칙」(反傾銷調查信息披露暫行規則), 「덤핑 및 덤핑 마진 재심 임시규칙」(反傾銷及傾銷幅度期中復審暫行規則), 「반덤핑 현지 실사 임시규칙」(反傾銷調查實地核査暫行規則), 「반덤핑 조사 신규수출입자 재심 임시규칙」(反傾銷新出口商復審暫行規則), 「반덤핑관세 환급 임시규칙」(反傾銷退稅暫行規則), 「반덤핑 가격 승낙에 관한 임시규칙」(反傾銷價格承諾暫行規則), 「반덤핑 상품 범위 조정절차 임시규칙」(關於反傾銷產品範圍調整程序的暫行規則).

101) 司法解釋 2002年 第35号.

102) 수출입공평무역국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관련부서와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그리고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실시한다. ②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그리고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조사개시결정, 공고 발포, 제품범위조정, 정보공개, 조사관정, 재심, 협의·협상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③ 중국에 대한 다른 나라(지역)의 불공평한 법규·정책·조치를 조사하고 교섭한다. ④ 국내 기업들의 응소에 대해 지도하고 조정한다. ⑤ 수출제품의 상황에 추적하고 분석하며, 세계 무역·투자 장벽조사 및 경보 시스템을 설립하고 보완한다. 그리고 定期 국가(지역)별 무역·투자 상황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⑥ 기타 정부기구, 중계기구, 기업과 같이 수출입공평무역과 관련된 홍보, 훈련, 안내를 한다. ⑦ 관련부서와 같이 쌍무협정조건을 세우고 협상에 참여한다. WTO에서 반덤핑, 상계관세, 그리고 세이프가드에 관한 다국간의 협상에 참여한다.(<http://gpj.mofcom.gov.cn/>)

103) 산업피해조사국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반덤핑, 상계관세, 그리고 세이프가드에 관한 구제제도를 참여하여 제정한다. ② 반덤핑조사, 상계관세조사, 그리고 세이프가드조사에서 국내 산업 피해와 피해마진을 조사한다. ③ 산업피해의 조사결과를 상무부의 명의로 공포한다. ④ 산업피해구제조치를 실시한 후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효과를 평가하고 제안한다. ⑤ 산업피해 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제경제의 발

산하 관련 부서와 조사팀을 구성하여 산업피해조사를 한다. 세관은 반덤핑조치를 집행한다. 관세세척위원회¹⁰⁴⁾는 반덤핑관세율을 결정한다.

(나) 운용절차의 개관

중국 반덤핑조치의 절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가 반덤핑조사개시신청서와 관련 증거를 수출입공평무역국에 제출한 후에 수출입공평무역국은 신청서와 관련 증거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공고한다.(제16조) 둘째, 수출입공평무역국은 덤핑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산업피해조사국은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상무부는 덤핑조사와 산업피해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확정하여 예비판정을 내린다.(제24조) 예비판정이 부정적인 판정인 경우에 상무부는 반덤핑조사를 완료하며, 긍정적인 판정인 경우에 상무부의 제안을 근거하여 관세세척위원회가 잠정반덤핑관세부과를 결정하고, 세관은 관세부과조치를 집행한다.(제29조) 잠정반덤핑조치의 실시기간은 공고한 날로부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경우에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반덤핑조사개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잠정반덤핑조치를 할 수 없다.(제30조) 셋째, 조사대상 제품의 수출업자가 반덤핑조사 동안 상무부에 가격인상약속을 할 수 있다.(제31조) 넷째, 상무부는 긍정적인 최종판정을 내린 후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37조) 상무부의 제안을 근거하여 관세세척위원회가 반덤핑관세부과를 결정하고, 세관은 반덤핑관세부과조치를 집행한다.(제38조) 반덤핑관세부과의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48조)

전·변화 및 수출입의 이상상황을 감시한다. 定期 산업피해 경보보고서, 산업경쟁력 현황보고서 그리고 대안을 제출한다. ⑥ 기타 정부기구, 중계기구와 같이 수출입공평무역과 관련된 홍보, 훈련, 안내를 한다.(<http://dcj.mofcom.gov.cn/>)

104) 관세세척위원회는 국무원 산하의 조정기구이다. 관세세척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관세율, 년도별 잠정관세율, 쿼터관세의 관세율 그리고 특별관세율을 조정한다. ②관세세척번호를 개정한다. ③ 「중국수출입관세조례」를 제안하여 개정한다.(http://www.mof.gov.cn/news/20050228_1522_4146.htm)

(2) 덤핑조사

① 정상가격

덤핑이란 정상거래에서 수입제품이 그 정상 가격보다 낮은 수출가격으로 중국 시장에 진입한 것을 말한다.(제3조)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¹⁰⁵⁾ 정상가격은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일반적으로 정상가격은 수출국의 국내 판매가격, 제3국 가격 그리고 구성가격으로 확정될 수 있다. 수출국 국내가격은 수출국의 동종제품으로 정상거래에서 상업적 규모로 판매된 가격으로 간주한다. 제3국 가격은 수출국이 당해제품을 제3국으로 판매된 가격이다. 제3국 가격을 결정할 때, 제3국으로 수출된 동종제품의 대표가격, 제3국의 시장조건이 수입국과 유사성 그리고 제품의 수입규모 등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구성가격은 수출가격에 제조비용, 이윤, 보험비용 그리고 판매비용 등의 합리적 비용을 더한 것으로 인정된다.¹⁰⁶⁾

「반덤핑조례」에서 정상가격을 다음 방법으로 확정하고 있다.

첫째, 수출국(지역) 시장의 국내 판매가격으로, 수출국(지역) 시장에서 동종상품의 비교가능가격이 있는 경우에 당해 비교가능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둘째, 제3국 수출가격으로 동종상품이 수출국(지역)시장의 정상거래에서 판매되지 않았거나 당해 동종상품의 가격, 수량을 근거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3국(지역) 수출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셋째, 원산국(지역)에서 동종상품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비용, 이윤을 더한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넷째, 수입제품이 원산국(지역)에서 직접 수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국의 국내 판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그러나 수출국(지역)을 중계무역국으로 하거나 제품이 수출국(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경우와 수출국(지역)에 비교가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원산국(지역)에서 동종상품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제4조)

105) 홍순직, “국제 반덤핑 규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63.

106) 張權鎬, “반덤핑제도의 운영현황과 제도적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9.12, p.329.

② 수출가격과 덤핑마진의 확정

덤핑마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상가격 이외에 수출가격을 확정하여야 한다. 중국 다음 방법으로 수출가격을 확정한다.

첫째, 수입제품의 실제 지불가격 또는 지불해야 할 가격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수출가격으로 한다. 둘째 수입제품의 수출가격이 없거나 그 가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당해 수입제품을 최초의 독립 매입자에 대한 轉賣가격에 따른 추정가격을 수출가격으로 한다. 그러나 당해 수입제품을 독립 매입자에게 전매하지 않았거나 수입시의 상태로 전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무부가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여 추정가격을 수출가격으로 할 수 있다.(제5조)¹⁰⁷⁾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를 덤핑차액 또는 덤핑마진이라 한다. 양 가격을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기간, 동종물품, 판매시점 등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를 하여야 한다. 즉 가격의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차이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¹⁰⁸⁾ 중국은 덤핑마진을 산정할 때 “덤핑마진=(정상가격 - 수출가격/가중평균CIF가격)*100%”의 공식에 의한다.¹⁰⁹⁾ 덤핑마진이 2%이하인 경우에는 미소 마진이라 하여 덤핑조사를 종결하게 된다. 라이신안(案)에서 상무부는 한국 BASF주식회사가 중국으로 수출한 제품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였고, 다른 요소로 인한 가격변화에 대해 조정하였고, 한국 BASF주식회사의 덤핑마진을 2%로 판정하였다. 결국 상무부는 「반덤핑조례」 제27조에 의하여 반덤핑조사를 종료하였다.¹¹⁰⁾

(3) 산업피해조사

국내산업의 피해란 덤핑이 이미 확립된 국내산업에 대해 실질적 피해를 입혔거나 실질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국내산업의 확립에 대해 실질적

107) 金汝善, “中國의 對韓 反덤핑 規制에 대한 對應理論開發에 관한 研究”, 『成均館法學』 제17권 제1호, 比較法研究所, 2005, pp.467-468.

108) 이주윤·고상범, “WTO 체제 하의 반덤핑 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 및 향후 한국에의 교훈”, 『제3회 산업피해구제제도 대학원생세미나논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p.68.

109) 尙明, 『反傾銷-WTO規則及中外法律與實踐』, 法律出版社, 2004, p.478.

110) 商務部 2002年 第23号 公告.

장애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피해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상무부가 책임지며, 그중 농산물과 관련된 국내산업 피해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상무부와 농업부가 진행한다.(제7조)

① 국내산업 및 동종상품

(가) 국내산업

「반덤핑조례」에서 “국내산업이란 국내 모든 동종 제품의 산업, 또는 그 총 생산량이 국내 동종 제품 총 생산량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한 산업을 말한다. 다만 국내 생산자가 수출경영자 또는 수입경영자와 관련될 경우, 또는 그 자체가 덤핑 수입제품의 수입경영자일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은 국내산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국내 1개의 지역시장의 생산자가 그 시장에서 동종 제품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판매하고 당해 시장 중에 동종 상품의 수요가 주로 국내 기타 지역의 생산자가 공급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1개의 단독 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기구(이하 신청자라 함)는 상무부 산하에 있는 산업피해조사국에 반덤핑조사에 대한 서면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에 신청인과 조사대상에 관련된 기본내용¹¹¹⁾ 및 조사신청의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제13조)

신청자의 자격을 인증할 수 있는 조건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는 국내 산업 동종상품의 총 생산량에서 50% 이상을 차지한다. 둘째, 신청자의 생산량이 국내 총생산량의 50%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산량은 신청자 및 신청반대자의 총 생산량의 50%를 초과한다면 신청자격을 인증할 수 있다. 셋째, 신청자의 생산량이 국내 동종제품의 총 생산량의 25%를 초과한다면 국내산업을 대표적인 산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넷째, 국내생산업자가 너무 분

111) 신청인의 기본내용은 ① 신청인의 명칭, 주소 및 관련 상황. ② 조사 신청 수입제품에 대한 완벽한 설명. 여기에는 제품명칭, 관련 수출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 기지의 수출경영자 또는 생산자, 수출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 국내 시장 제품 판매 가격정보, 수출가격 정보 등을 포함한다. ③ 국내 동일종류 제품의 생산 수량과 가격에 대한 설명. ④ 조사신청 수입제품의 수량과 국내산업 동종상품에 대한 가격영향. ⑤ 신청인이 설명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내용이 있다.

산하고 또한 생산업자가 많을 경우에는 상무부가 통계학의 추출방식으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¹¹²⁾ 그러나 신청자의 생산량은 동종상품의 국내 총 생산량의 25%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에 조사시청을 할 수 없다.(제17조)

(나) 동종상품

동종상품은 덤핑 수입상품과 같은 상품이며, 같은 상품이 없으면 당해 상품과 특성에 가장 비슷한 유사상품을 간주한다.(제12조) 동종상품을 확정할 때 상품의 세척번호, 물리특성, 화학특성, 용도, 기술특징 등의 당해 상품의 유일성·배타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하여 조사하여 확정한다. 현재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상품의 유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 기준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첫째, 제품의 물리구성은 유사성이 있다. 둘째, 제품이 최종적으로 동일하고 유사하게 사용된다. 셋째, 당해제품이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고 대신하여 사용한 수 있다. 넷째, HS제품분류기준에

의하여 동종상품을 판정한다.¹¹³⁾ 냉연강관안(案)에서 상무부는 제품의 물리특성, 화학 특성, 생산관정, 용도 그리고 대체성(使用互換性) 등의 요소를 통하여 동종상품을 판정하였다¹¹⁴⁾.

덤핑 수입제품의 영향에 대한 평가는 국내 동종 상품의 단독범위를 확정함에 근거하여 평가해야 하며, 국내 동종 상품의 생산에 대한 단독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국내 동종 상품을 포함한 가장 협소한 제품조직 또는 상품범위를 포함하는 상품생산에 근거하여 심사해야 한다.(제10조)

② 산업피해

(가) 피해와 조사

국내 산업 피해 조사는 상무부가 책임을 지며, 산업피해 최종 조사보고서를

112) 「반덤핑조사 결정 임시규칙」(反傾銷調查立案暫行規則) 제6, 7조.

113) 尙明, 前掲書, p.29.

114) 商務部 2003年 第50号 公告.

작성한다. 보고서에서 피해조사 확정결과, 관련기관의 의견 그리고 조사와 관련된 자료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덤핑 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는 다음 요소와 같이 고려해야 한다. 첫째, 덤핑 수입제품 물량을 고려한다. 여기서 덤핑 수입제품의 물량은 덤핑 수입제품의 절대 물량, 국내 동종상품 생산 또는 소비 물량에 대비하여 대량적 증가여부, 그리고 덤핑 수입제품의 대량 증가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둘째, 덤핑 수입제품의 가격을 고려한다. 즉 덤핑 수입제품의 가격이 대폭 인하 및 국내 동종상품 가격에 대한 억제와 압력 여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셋째, 덤핑 수입제품이 국내산업 관련 경제요소와 지표¹¹⁵⁾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다. 넷째, 덤핑 수입제품의 수출국(지역), 원산국(지역)에서 피조사제품의 생산능력, 수출능력, 재고상황을 고려한다. 다섯째,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야기한 기타 요소를 고려한다.(제8조)

(나) 실질적인 피해

실질적인 피해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이미 발생되었고 혹은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이 나타난 것을 말한다. 실질적인 피해를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덤핑 수입제품이 대량적으로 증가한다. 대량증가는 보통 절대증가와 상대증가의 2가지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수입국 국내 생산량과 소비량의 증가율 또는 덤핑 수입제품이 수입국의 시장 점유율을 대비하는 것으로 대량증가 여부를 판정한다.¹¹⁶⁾ 그러나 중국 「반덤핑조례」에서는 대량증가의 판단기준은 불명확하고 자유재량의 범위가 넓다. 수입제품의 대량증가에 대해 미국 이외에 대부분 국가들이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지 않는다. 미국 「반덤핑법」에서는 덤핑조사를 시작한 3개월 이내 수입품의 수입증가비례가 덤핑조사 이전 같은 기간의 수입품 수입증가비례보다 증가율이 15%를 초과한다면 대량증가를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¹⁷⁾ 둘째, 덤핑 수입제품의 가격

115) 판매량,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설비가동률의 저하, 덤핑마진율의 크기,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조달능력 등이 있다.(「反傾銷調查立案暫行規則」 제20조)

116) 李毅·李曉峰, 『國際貿易救濟措施--反傾銷,反補貼,保障措施与特保措施』, 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 2005, pp.59-61.

117) 許子英, “反傾銷法律實踐中的產業損害問題”, (<http://www.chinalaw-info.com/fzdt>)

은 국내 동종상품의 가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다. 즉 수입제품의 가격에 대해 조사할 때 당해 수입제품의 피조사수출국과 다른 수출국의 동종상품 가격을 비교해 보아 피조사수출국의 상품가격은 대폭 인하 또는 수입국 국내 동종상품의 가격에 대한 대폭 억제, 가격인하 압력 등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한다.¹¹⁸⁾ 가령 수입제품의 대량증가와 가격의 대폭인하의 사실이 존재한다면 수입국의 동종상품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신문지 사건을 보면 중국이 조사를 통해 1995년 국내 신문지 가격은 1994년보다 32.2%를 올라갔고, 1996년 신문지 가격은 1995년보다 19%를 올라간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1997년 생산 원가가 올라간데 오히려 신문지 가격은 7%를 내려갔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 한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수입된 신문지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정하였다.¹¹⁹⁾ 셋째, 수입제품은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이 덤핑여부를 판정하는 요소이다. 구체적으로 제품의 판매량, 이윤, 생산량, 시장 점유율, 생산능력, 투자수익상황, 설비 이용률에서 나타나는 실제 하락이나 잠재된 하락, 덤핑마진율의 크기, 자금순환, 재고상황,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 능력 등의 요소 및 관계지표를 포함한다. 모두 지표 및 요소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요소와 지표를 근거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판정할 수도 있다.¹²⁰⁾

(다) 실질적인 피해위협

실질적인 피해위협(threat of material injury)은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의 명확한 예견과 긴박한 상황의 도래에 근거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¹²¹⁾ 실질적인 피해위협은 다음과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피해를 당하는 산업은 이미 설립된 산업이다. 둘째, 당해 산업은 현실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반덤핑조치를 곧바로 채택하지 않으면 당해 산업이 반드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셋째,

118) WTO 「반덤핑협정」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제3.2조.

119) 屈光清, 『反傾銷法律問題研究』, 法律出版社, 2004, pp.259-266.

120) WTO 「반덤핑협정」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제3.4조.

121) 金汝善, “中國의 對韓 反덤핑 規制에 대한 對應理論開發에 관한 研究”, 『成均館法學』 제17권 제1호, 比較法研究所, 2005, p.473.

피해위협은 객관적 사실이고 근거 없이 추측하면 안 된다.

피해위협을 확정할 때 다음과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덤핑 수입제품이 빠른 속도로 국내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둘째, 수출업자가 충분히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혹은 실질 증가 능력, 수입시장에 진입을 표명한 덤핑수출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가능성. 셋째, 수입제품이 국내 동종상품에 대해 대폭 억제하는 가격으로 수입되는가 여부와 수입상품에 대한 수요증가를 일으킬 가능성. 넷째, 수입품의 재고상황을 고려요소로 한다.¹²²⁾ 또한 미국이 다음과 같은 경제요소를 추가하였다. 첫째, 수출국이 짧은 기간에 대폭적으로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다. 둘째, 수출국이 원래 제품의 생산을 정지하고 다른 관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다. 셋째, 국내 산업의 발전에 실질·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한다.¹²³⁾

(라) 실질적인 지연

실질적인 지연(material retardation)이란 덤핑 수입제품은 국내산업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나 피해위협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지만 국내 새로운 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키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인 지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연을 당하는 산업은 반드시 확립하지 않은 산업이다. 둘째, 지연을 당하는 산업이 반드시 확립되고 있는 것이다. 즉 당해 산업은 신기술 산업이나 전통적인 산업이 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확립되는 중이다. 셋째, 지연은 반드시 객관적 사실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연에 관한 판단기준은 각국의 법규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미국이 對캐나다 대구어(codfish, 大口魚)사례에서 실질적인 지연의 판정기준을 설명한 적이 있다. 첫째, 이미 생산을 시작하였지만 아직 안정하게 경영하지 못한 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새로운 산업에 심각한 지연 여부를 판정한다. 셋째, 덤핑이 아직 생산을 시작하지 않은 기업의 생산개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¹²⁴⁾

122) WTO 「반덤핑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제3.7조.

123) 高永富·張玉卿, 「國際反傾銷法」, 夏旦大學出版社, 2001, p.312.

124) C. Morgan, "Competition Policy and Antidumping", 『Journal of World Trade』, 1996, p.63.

(마) 누적 평가

덤핑 수입제품이 2개 이상 국가(지역)에서 수입된 경우에 누적 평가(Cumulative Assessment)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적 평가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국가(지역)에서 수입한 덤핑 수입제품의 덤핑 마진이 2%보다 적지 않고 그 수입량을 무시할 수 없다.¹²⁵⁾ 둘째, 덤핑 수입 제품간 또는 덤핑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상품간의 경쟁조건을 근거하여, 누적 평가가 적당한 것이다.(제9조)

폴리우레탄발포제 사례에서 중국이 영국, 미국, 한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의 폴리우레탄발포제에 반덤핑 조사를 하였다. 조사를 통해 프랑스에서 수입된 폴리우레탄발포제는 총 수입량의 2.6%를 차지하므로 프랑스의 폴리우레탄발포제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종료하였다.¹²⁶⁾

③ 피해마진의 확정

덤핑마진이 국내산업의 피해상황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피해마진이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피해마진의 확정에 관한 법규가 없다. 실무적으로 피해마진을 확정하기 위하여 덤핑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 수출가격, 수출국 국내 판매가격 등의 지표를 고찰하고,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요소를¹²⁷⁾ 고려한다. 덤핑마진과 피해마진을 근거하여 국내산업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은 차액분석법을 사용하여 피해마진을 확정한다. 즉 덤핑 제품의 수입가격과 국내제품의 판매가격간의 차이를 일반적인 지표로 삼아 피해마진을 산정한다. 산업피해마진의 산정은 “산업피해마진=(국내 동종상품의 판매가격 - 덤핑제품의 수입 조정가격/덤핑제품의 CIF 가격)*100%”의 공식으로 계산한다.¹²⁸⁾

125) 무시 할 수 있다고 함은 1개 국가(지역)의 덤핑 수입제품의 수량이 동종상품의 총 수입량에서 3%를 초과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몇 개 국가(지역)의 총 수입량이 동종상품 총수입량의 7%를 초과한 경우는 제외이다.

126) 商務部 2002年 第20号 公告.

127) 불가항력, 시장수급상황의 변화, 정상경쟁 등이 있다.

128) 金汝善, “中國의 對韓 反덤핑 規制에 대한 對應理論開發에 관한 研究”, 『成均館法學』 제17권 제1호, 比較法研究所, 2005, p.476.

④ 인과관계

어떤 기준에 의하여 덤핑행위가 산업피해를 초래한 것을 입증된다면 덤핑행위와 산업피해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덤핑조치가 덤핑과 피해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이 없이 부과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과관계를 확인된 후에 반덤핑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중국은 조사시청서류의 필요내용(제15조)과 조사종료의 조건(제27조)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조문을 두고 인과관계의 확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또한 인과관계의 확정요소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덤핑 수입제품의 수입상황, 수출국의 기술발전 상황, 국내산업의 수출상황, 국내 소비상황, 경쟁상황, 국내산업의 생산 상황 그리고 불가항력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인과관계를 확정함은 어떠한 요소를 근거하여 판정하는 기준이 명백하지 않는다.¹²⁹⁾

실무적으로 중국의 인과관계 판정기준은 덤핑행위가 국내산업피해에 대해 역할을 한 것을 확정한다면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일반적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즉 덤핑행위는 국내 산업피해의 중요한 원인 여부를 확정할 필요가 없다.¹³⁰⁾ 중국은 신문지와 아크릴산 에스테르 사례에서 덤핑이 산업피해에 중요한 원인이라고 확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對韓 반덤핑 사례에서 중국은 일반적 인과관계 기준으로 확정하였다.

(4) 반덤핑조사절차

① 서면조사

상무부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에 조사주관기관은 조사대상국의 생산업자나 수출업자에 서면질의서를 발송한다. 조사 질의서는 덤핑에 관한 질의서와 피해에 관한 질의서로 2가지가 있다. 사례를 보면 발송한 질의서는 피조사제품의 생산업자 및 수출업자 덤핑조사 질의서, 국내 생산업자 산업피해조사 질의

129) 宋和平, “産業損害調查中的五大問題”, 『中國經貿導刊』, 2002, p.35.

130) 李毅·李曉峰, 前揭書, p.77.

서, 국내 수입업자 산업피해조사 질의서 그리고 외국 생산업자 산업피해조사 질의서가 있다.

주관기관은 피조사국가의 생산업자나 수출업자에 20일 응소기간을 준다. 주관기관은 피조사국가의 생산업자나 수출업자에서 응소표시를 받으면 10일 내에 조사 질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질의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37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주관기관은 답변서 제출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¹³¹⁾

② 현지실사

현지실사란 주관기관이 반덤핑조사 과정에서 조사팀을 피조사제품의 수출국에 파견하여 해당 국가의 수출업자나 생산업자가 제출한 자료 및 정보의 사실성을 확인하는 조사절차를 말한다.¹³²⁾ 「반덤핑조례」에서 상무부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련 국가(지역)가 반대한 경우에는 제외된다.(제20조) 현지실사 조사팀은 상황에 따라 전체조사나 표본조사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¹³³⁾ 현지실사를 마치면 주관기관은 조사결과를 피조사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문회

반덤핑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자기의 의견과 증거제공의 기회를 부여한다.(제20조) 일반적으로 청문회는 조사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요구 혹은 주관기관의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¹³⁴⁾ 이해관계인은 청문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 주관기관에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신청사항 그리고 신청원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청문회에서 덤핑마진의 확정, 피해의 확정, 인과관계, 피조사제품의 범위, 신청자의 자격 그리고 공공이익 등의 문제에 관한 자기의 증거와 의견에 대해 변론할 수 있다.

131) 「반덤핑 질의서 조사에 관한 임시 규칙」(反傾銷問券調查暫行規則, 商務部, 2002年 第14号令) 제6, 8, 17 조.

132) 尙明, 前掲書, p.491.

133) 「반덤핑 현지실사에 관한 임시 규칙」(反傾銷調查實地核査暫行規則, 商務部, 2002年 第13号令) 제17조.

134) 「반덤핑 조사 청문회 임시 규칙」(反傾銷調查听証會暫行規則, 商務部, 2002年 第3号令) 제5조.

④ 표본조사

반덤핑조사에서 수출업자, 생산업자, 제품모델 또는 거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상무부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이해관계인, 제품 또는 거래에 대해 합리적 비례를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¹³⁵⁾ 표본조사는 가능한 정보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표본을 추출된 회사가 단독적 덤핑마진율로 적용하며 다른 회사에 표본추출회사의 덤핑마진의 가중평균치로 확정한다.¹³⁶⁾

⑤ 정보공개

정보공개란 반덤핑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주관기관의 지정된 장소에서 제출된 공개 정보와 재료를 조사·열람·抄錄·복사하는 것을 말한다.¹³⁷⁾ 이해관계인은 정보를 구하러 가기 전에 주관기관과 연락해서 필요할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보를 열람할 때 신분을 증명해야 하며 등기해야 한다.¹³⁸⁾

(5) 반덤핑규제

① 관세부과조치

(가) 반덤핑 잠정조치

예비판정에서 덤핑행위가 확정된다면 반덤핑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덤핑제품을 수입할 때 주과기관은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방식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잠정 덤핑관세, 보증금 그리고 담보의 금액이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다.(제28조) 잠정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상무부가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잠정 덤핑관세율을 결정하고 상무부가 결과를 공고한

135) 「반덤핑 조사 표본 추출 임시 규칙」(反傾銷調查抽樣暫行規則, 商務部, 2002年 第3号令) 제17조.

136) 「반덤핑 조사 표본 추출 임시 규칙」(反傾銷調查抽樣暫行規則, 商務部, 2002年 第3号令) 제13조.

137) 「반덤핑 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임시 규칙」(反傾銷調查公開信息查閱暫行規則, 商務部, 2002年 第19号令) 제3조.

138) 「반덤핑 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임시 규칙」(反傾銷調查公開信息查閱暫行規則, 商務部, 2002年 第19号令) 제8, 9조.

다. 세관은 규정한 실시일로부터 결정을 집행한다.(제29조) 반덤핑잠정조치의 실시기간은 반덤핑잠정조치를 실시한 날로부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경우에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반덤핑 조사개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반덤핑 잠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제30조)

(나) 반덤핑관세의 부과

덤핑과 국내산업피해가 존재하는 경우에 덤핑 수입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37조) 상무부는 수출업자의 각각 덤핑마진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조사범위외의 수출업자의 덤핑 수입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야 할 경우에는 상무부는 합리적 방식으로 적용할 반덤핑관세를 확정하여야 한다.(제41조) 반덤핑관세는 확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다.(제42조) 반덤핑관세의 부과기간 및 가격약속의 이행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심을 거쳐 반덤핑조치를 종료한다면 덤핑과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거나 재발할 수 있음을 확정하였을 경우에 반덤핑관세의 부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48조)

② 가격약속

반덤핑 조사기간에 덤핑상품의 수출업자가 상무부에 가격개정 또는 덤핑가격으로의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가격약속을 할 수 있다. 조사기관은 덤핑과 덤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긍정적 예비판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가격약속을 접수할 수 없다. 상무부는 반덤핑조사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경우에 가격약속을 자동적으로 취소한다.

수출업자가 가격약속을 위반한 경우에 상무부는 「반덤핑조례」에 따라 반덤핑의 조사 재발동할 수 있다. 상무부는 취득한 정보를 근거하여 반덤핑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반덤핑 잠정조치를 실시하기 이전 90일 내에 수입한 제품에 반덤핑관세를 추정할 수 있다. 단 가격약속을 하기 전에 수입한 제품을 제외한다.(제36조)

사례를 보면 1999년 중국 太原철강주식회사, 上海浦東철강주식회사 그리고

陝西정밀금속주식회사는 중국 스테인리스냉연강판산업을 대표하여 대외무역경제합작부(현재의 상무부, 中國對外貿易經濟合作部, 이하외경부라고 함)에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스테인리스냉연강판에 반덤핑조사개시 신청을 제출하였다. 외경부는 최종판정을 공고하기 전에 한국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등의 6개 회사에서 가격승낙을 받아서 “가격승낙협약”의 규정에 의해 집행하였다.¹³⁹⁾ 가격승낙은 반덤핑조치에서 이해관계 양측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협의를 통해서 국내 산업피해를 구제하는 수단이다. 가격승낙은 덤핑관세의 보충조치로서 어떤 경우에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격승낙에 대한 注意는 다음 2가지와 같다. 첫째, 가격승낙을 제출하는 기간은 예비판정 후에 있다. 둘째, 가격승낙은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 하고, 국내시장에서 동종상품의 가격에 대한 영향을 빈번하게 미치지 않게 해야 한다.¹⁴⁰⁾

(6) 재심제도

반덤핑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통 반덤핑조치를 실시한 상당 기간 후에 상황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계속 실시한 반덤핑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재심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새로운 상황에 따라 새로운 조치를 취하여,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재심제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덤핑조치를 취소한다면 피해가 또 나타날 경우에는 실시하고 있는 반덤핑조치를 유지한다. 둘째, 현행 반덤핑조치가 덤핑으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 반덤핑조치를 개정한다. 셋째, 국내산업이 소송을 철회하거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반덤핑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¹⁴¹⁾

「반덤핑조례」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후에 상무부는 정당한 이유를 근

139) 가격승낙협약에서 한국의 피조사회사에 대한 덤핑마진이 별도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 11%이며, 인천제철주식회사에 4%이며, 삼미특수강 주식회사에 6%이며, 대한전선주식회사에 7%이며, 주식회사대양금속에 6%이며, 삼원금속주식회사에 9%이다. 기타 한국회사에 대해 57% 덤핑마진으로 판정한다. 덤핑관세의 부과기간은 2000년 4월 13일부터 시작하여 5년 동안 할 것이다.(尙明, 前掲書, p.584)

140) 尙明, 前掲書, p.599.

141) <http://gpj.mofcom.gov.cn/aarticle/bu/bx/200301/20030100065582.html>

거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 또한 합리적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서 제출한 증거를 심사하고, 반덤핑관세를 계속 부과할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제49조) 재심의 조사절차는 반덤핑조사의 절차를 참조하여 진행한다. 재심의 조사기간은 재심조사가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제51조)

중국의 재심제도는 행정재심과 사법재심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행정재심은 이해관계자가 「반덤핑조례」에 의하여 사무부에 재심신청을 제출하여, 반덤핑조사에서 조사시청자의 자격, 피해와 덤핑의 확정, 인과관계, 비교가능가격의 확정, 덤핑마진과 피해마진의 산정, 가격약속 등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사무부는 법규에 따라 취한 반덤핑조치에 재심한다. 사법재심은 이해관계자가 행정소송과 사법소송을 통해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와 법규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① 행정재심

(가) 신규수출업자 재심

신규수출업자 재심은 조사 기간 내에 조사대상 상품을 중국에 수출한 적이 없는 수출업자와 생산업자가 반덤핑조치의 실시 이후에 다시 반덤핑관세율을 산정하는 것을 사무부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수출업자 재심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기간 내에 중국에 피조사제품을 수출한 적이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둘째, 기타 피조사 수출업자와의 관계가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셋째, 조사 기간 이후에 중국에 피조사제품을 수출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¹⁴²⁾

신규수출업자는 재심의 서면재료를 제출한 후에 주관기관은 30일 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규수출업자 재심에서 서면조사, 현지실사 등의 조사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신규수출업자 재심의 조사기간은 재심 신청한 날로부터 이전 6개월로 한다. 신규수출업자 재심의 조사기간은 조사개시결정한 날

142) 尙明, 前掲書, p.510.

로부터 9개원을 초과할 수 없다.¹⁴³⁾

2004년 2월 상무부는 한국의 페놀제품에 1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¹⁴⁴⁾ 2005년 한국 LG석유화학주식회사(LG Petrochemical Co. Ltd.)가 상무부에 신규수출업자 재심을 신청하였다. 상무부는 국무원관세세척위원회와 재심한 후에 LG석유화학주식회사의 덤핑마진이 0%로 판정하였다.¹⁴⁵⁾

(나) 중간 재심

중간 재심은 반덤핑조치 실시 또는 가격약속을 집행한 후 덤핑 수입제품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중간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상무부는 직접 중간재심을 한다. 반덤핑조치는 실시 1년 이후 30일 내에 피조사 수출업자나 생산업자가 중간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향후 1년 단위로 청구할 수 있다. 피조사 수출업자나 생산업자는 덤핑, 덤핑마진 그리고 피해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절차는 반덤핑조사 절차와 대체로 같다. 재심의 조사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수출업자는 중간 재심의 조사결과가 공고된 15일 내에 가격약속을 시청할 수 있다. 중간 재심 기간 내에 반덤핑조치를 계속 집행하고 재심판정을 공고된 날로부터 실행한다.¹⁴⁶⁾ 2003년 11월 상무부는 일본과 한국의 TDI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¹⁴⁷⁾ 2004년 12월 중간재심을 통해 상무부는 일본과 한국에서 수입된 TDI제품의 반덤핑관세율에 조정하였다.¹⁴⁸⁾

(다) 일몰 재심

일몰 재심이란 반덤핑조치 또는 가격약속의 부과 기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국내산업이 충분한 증거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조사를 통

143) 「신규 수출업자의 재심에 관한 임시 규칙」(反傾銷新出口商夏審暫行規則, 商務部, 2002年, 第21号令) 제 16, 24조.

144) 商務部 2004年 第2号 公告.

145) 商務部 2006年 第64号 公告.

146) 「덤핑 및 덤핑마진 중간 재심에 관한 임시 규칙」(傾銷及傾銷幅度期中夏審暫行規則, 商務部, 2002年, 第 23号令) 제6, 22, 28조

147) 商務部 2003年 第61号 公告.

148) 商務部 2005年 第115号 公告.

해 덤핑 수입제품이 향후 국내산업에 지속적으로 피해나 피해위협을 초래할 것을 확정한다면 반덤핑조치를 계속 취할 것을 말한다. 중국은 일몰재심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반덤핑조치가 완료하기 6개월 전에 주관기관은 일몰재심을 할 수 있다고 공고한다. 일몰 재심신청자가 보통 다음과 같이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첫째, 지속적 덤핑행위와 피해가 존재한다. 둘째, 현행 반덤핑조치가 국내 산업피해를 해소하고 있다. 셋째, 덤핑 수입제품이 미래 국내산업에 피해나 피해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일몰 재심에서 주로 신청자의 자격, 조사대상 제품의 국내 판매 가격, 제3국 수출가격, 생산원가, 생산비용, 생산원가, 對中 수출가격, 수출국의 재고상황, 시장점유율, 임금 그리고 투자이익 등의 요소를 조사한다.

2004년 12월 상무부는 한국의 폴리에스테르필름에 일몰재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¹⁴⁹⁾ 상무부는 덤핑과 피해에 조사하였고 미래 피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 수입된 폴리에스테르필름에 지속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결정하였다.¹⁵⁰⁾

(라) 관세 환급 재심

반덤핑관세환급 재심이란 반덤핑조사에서 주관기관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덤핑마진을 초과하는 관세를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반덤핑조사 이전의 일정한 기간 내에 덤핑수입제품의 덤핑마진으로 반덤핑관세를 확정하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덤핑과 피해의 사실성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출입업자가 관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⁵¹⁾ 관세 환급 신청자가 서류로 증거와 재료를 제출하여야 한다.¹⁵²⁾

149) 商務部 2004年 第84号 公告.

150) 商務部 2005年 第109号 公告.

151) 「반덤핑 관세 환급에 관한 임시 규칙」(反傾銷退稅暫行規則, 商務部, 2002年 第22号令) 제3조.

152) “첫째, 신청자 또는 공급업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관련 상황, 둘째, 신청 이전 6개월 동안 조사대상 제품의 국내 평균 판매가격·교역건수·총금액, 對中 평균 수출가격·교역건수·총금액 그리고 대제3국의 평균 수출가격·교역건수·총금액, 셋째, 신청 이전 6개월 동안 조사대상 제품의 정상가격, 수출가격, 넷째, 덤핑마진을 산정하기 위한 각종 조정 데이터 및 계산 결과, 다섯째, 조사대상 제품의 수입계약서, 영수증, 선하증권, 지불증명 사본 그리고 신청자의 납세 영수증, 여섯째, 신청자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기타 내용”이 있다.(「반덤핑 관세 환급에 관한 임시 규칙」 제6조.)

중국의 페놀제품에 반덤핑사례에서 말레이시아 BASF 석유 화학 개인 有限會社(BASF PETRONAS Chemicals Sdn. Bhd)가 상무부에 중간재심 및 관세 환급을 신청하였다. 상무부는 재심을 하였고 관세 환급을 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¹⁵³⁾

② 사법 재심

사법 재심이란 반덤핑조사에서 이해관계자가 조사주관기관 또는 행정심판의 판정을 불복할 경우에 독립적 사법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자가 반덤핑관세의 부과, 관세 환급, 신규수출업자 재심 등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과 「행정심판법」(行政復議法)에 의하여 행정심판 또는 인민법원에 사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53조) 또한 2003년 최고 인민법원은 「반덤핑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문제의 규정」(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反傾銷行政案件應用法律若干問題的規定)을 제정하였다.

이해관계자는 조사대상 제품과 관련된 수출업자, 수입업자, 생산업자 그리고 상업협회로 이해된다. 인민법원은 반덤핑 행정행위에 대해 사건수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¹⁵⁴⁾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사건의 1심 법원은 신청자소재지의 고급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이거나 고급인민법원이 되며, 2심 법원은 고급인민법원이거나 최고인민법원이 된다.¹⁵⁵⁾

다만 사법재심은 이해관계자가 행정행위와 이미 확정된 법률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당한 반덤핑 행정행위가 증거부족, 법규적용착오, 법률절차위반, 월권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인 증된다면 인민법원은 당해 행위를 취소하거나 피고인에게 다시 당해 반덤핑행정행위를 행한다고 판정할 수 있다.¹⁵⁶⁾ 현재까지 중국은 사법재심을 한 적이 없다.

153) 商務部 2005年 第40号 公告.

154) ①덤핑, 덤핑마진, 피해 그리고 피해마진에 대한 최종판정, ② 반덤핑관세의 부과결정, 關稅追徵의 결정, 관세환급의 결정 그리고 신규수출업자에 대한 관세부과의 결정, ③ 반덤핑관세 또는 가격약속의 유지·개정·취소에 관한 재심결정, ④ 법규에 의해 기타 제소할 수 있는 반덤핑 행정행위.(「반덤핑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문제의 규정」 제1조)

155) 「반덤핑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문제의 규정」 제1조.

156) 「반덤핑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문제의 규정」 제10조.

3) 상계관세조치

(1) 개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에 정부 보조금은 주로 기업들에 세수입 감면, 재정 보조 등이 있다. 또한 수출 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 및 경제개발구역 내에 국유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1994년 자동차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동차공업산업정책에 관한 통지」(關於印發汽車工業產業政策的通知)¹⁵⁷⁾에 의하여 자동차 산업에 보조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에 보조금조치를 WTO에 통고하여, 향후 8년 동안 보조금의 지급을 점점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이 아직 많은 상황이다. 중국은 철강, 섬유 등 전통산업의 수출보조금을 줄이고 IT,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수출보조금을 확대하고 있다.¹⁵⁸⁾ 최근 캐나다가 중국에 3건의 반보조금조사를 하였다. 또한 2006년 11월 23일 미국이 중국의 제지업계에 대해 반보조금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은 더 많은 반보조금제소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상계관세제도는 수입국의 입장에서 보조금이 지급된 외국제품이 중국 산업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정한 제도이다. 중국에는 수출국입장에서의 보조금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¹⁵⁹⁾ 따라서 향후 다른 나라와의 보조금 분쟁이 점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 법적구조와 운용체계

① 법적 구조

상계관세조치의 기본적인 법규는 「상계관세조례」(反補貼條例)이다. 처음에

157) 國務院令, 1994年 第17号.

158) 袁古浩, “論中國反補貼体系的建立与完善”, 『經濟与法』, 2003, pp.23-26.

159) 최송자, “대중국 무역구제 신 동향 및 중국의 보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국제거래법연구』(제14집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05, p.203.

중국은 덤핑관세와 상계관세에 관한 「반덤핑과 상계관세조례」를 제정하였으나, WTO 「보조금협정」과 부합하게 2001년 11월 이를 폐지하여, 「반덤핑조례」 및 「상계관세조례」를 나누어 관련 법규를 제정하였다. 「상계관세조례」는 총 6장 58조로 구성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004년 「상계관세에 관한 일부개정의 결정」(國務院關於修改中華人民共和國反補貼條例的決定)¹⁶⁰⁾에 의하여 「상계관세조례」에 대해 일부 개정하였다. 「상계관세조례」 하위에 임시실시규칙은 현재까지 총 9개가¹⁶¹⁾ 있으며, 관련 사법해석 1개가¹⁶²⁾ 있다.

② 운용체계

상계관세조치 관련 주관기관은 상무부, 관세세칙위원회, 그리고 세관이 있다. 상무부는 보조금조사를 통해 보조와 산업피해 여부를 판정한다. 세관은 상계관세조치를 집행하며,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제안을 근거하여 관세율을 결정한다.

중국 상계관세조치의 절차는 반덤핑조치의 조사절차와 큰 차이가 없고, 개괄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상무부는 신청자가¹⁶³⁾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증거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청자의 자격, 신청서 내용 및 첨부 증거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상계관세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160) 國務院令 第402号.

161) 「상계관세 산업피해 조사규정」(反補貼產業損害調查規定), 「상계관세 설문 조사 임시규칙」(反補貼問卷調查暫行規則), 「상계관세 현지 실사 임시규칙」(反補貼調查實地核査暫行規則), 「반덤핑·상계관세조치·세이프가드조치를 강화하는 업무에 관한 의견」(國家經貿委關於加強反傾銷反補貼保障措施的意見), 상계관세조사 결정 임시규칙(反補貼調查立案暫行規則), 「상계관세조사 청문회 임시규칙」(反補貼調查聽證會暫行規則),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및 국가통계국이 관련 산업협회에 반덤핑·상계관세조치·세이프가드조치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관한 통지」(國家經濟貿易委員會和國家統計局關於授予有關行業協會反傾銷、反補貼、保障措施有關職能及委托有關工作的通知),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서 반덤핑·상계관세조치·세이프가드조치의 조사와 판정위원회의 설립 및 국가경제무역위원회반덤핑·상계관세사 무실의 설립에 관한 통지」(關於成立國家經濟貿易委員會反傾銷反補貼產業損害調查與裁決委員會和國家經濟貿易委員會反傾銷反補貼辦公室的通知).

162) 「최고인민법원에서 상계관세행정소송을 판정할 경우에 적용하는 법률의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反補貼行政案件應用法律若干問題的規定).

163)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의 대표적인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기관은 상무부에 상계관세조사 서면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특별한 경우에 상무부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조사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제18조)

있다. 조사개시를 결정하기 전에 상무부는 가능한 피조사국 정부에 협의신청을 보낸다.(제16조) 조사 주관기관은 질의서, 표본추출, 공청회, 현지실사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혹은 이해관계국(지역) 정부에 의견진술과 증거제공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0조) 둘째, 상무부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보조금, 피해, 보조금과 피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예비판정을 내리고 공고한다.(제25조) 셋째, 상계관세조사 과정에서 수출국(지역) 정부가 보조금의 취소·단속약속 또는 수출업자가 가격인상약속을 제출한 경우 상무부는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한다.(제32조) 넷째, 상무부는 예비판정을 한 후에 보조, 보조금액, 피해마진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근거하여 최종판정을 내리고 공고한다. 최종판정을 내리기 전에 상무부는 최종판정의 결과와 증거를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국(지역) 정부에 통지해야 한다.(제26조) 상계관세조사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제27조)

(3) 실체적 요건

① 보조금

보조금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¹⁶⁴⁾ 또는 모든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지원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에 그러한 지원을 말한다.¹⁶⁵⁾ 「상계관세조례」에서 보조금은 수출국(지역)정부나 공공기관이 재정지원 또는 기타 형식의 수입(收入)과 가격지원을 제공하여, 被補助者에 대해 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제3조) 「보조금협정」에서 수출입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그리고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¹⁶⁶⁾

164) 즉 ① 자금 및 채무의 직접적 이전, ② 세액공제 등 정부세입의 포기, ③ 사회 간접자본 이외의 재화, 용역의 제공 및 재화의 구매, ④ 정부가 자금공여기관에 지급하거나, 민간기관이 정부의 위임 및 지시를 통해 상기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崔昇煥, 『국제경제법』, 법영사, 2006, p.332.)

165) 崔昇煥, 前掲書, 2006, p.332.

166) 서헌제, 전계서, p.366.

보조금은 불공정한 경쟁행위로 간주되어, 보조행위가 인위적으로 원가를 줄이고 정상적인 경쟁을 왜곡하며, 수입국 관련 산업에 피해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각국이 보조금 특히 금지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규정을 제정하여, 보조대상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운용하고 있다.¹⁶⁷⁾

② 보조금의 특정성

WTO의 「보조금협정」에서 보조금은 반드시 특정성(specificity)이 있는 경우에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⁶⁸⁾ 정부나 공공기관이 관할 범위 내에 특정기업이나 특정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이나 특정산업군에 대해 보조금을 명백하게 지급한다면 당해 보조금의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다.

「상계관세조례」에서 보조금의 특정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수출국(지역)의 정부가 기업이나 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다. 둘째, 수출국(지역)의 법규에서 기업이나 산업에 보조금을 준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셋째, 특정 구역 내에 기업이나 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을 지정하고 있다. 넷째,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획득할 수 있다. 다섯째, 자국(지역) 제품이 수입제품을 대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보조금을 획득할 수 있다. 게다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수량, 보조금 금액·비율·시간, 보조방식 등의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제4조)

③ 피해

(가) 피해

피해란 보조금이 이미 확립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또는 실질적인 피해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내산업의 확립에 실질적인 지연을 야기한 경우를 말한다.(제7조)

167) 최송자, 전계논문, p.198.

168)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협정)제1.2조.

상무부는 보조금이 국내산업에 초래하는 피해를 확정할 때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첫째, 보조행위가 무역에 초래할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한다. 둘째, 보조대상 제품의 절대적인 수입량을 고려한다. 또는 보조대상 제품이 국내 동종상품의 생산량·소비량과 비교하여 대량 증가여부를 고려한다. 또는 보조대상 제품의 대량 증가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셋째, 보조대상 제품의 수입가격 또는 보조대상 제품이 국내 동종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한다. 넷째, 보조대상 제품이 국내 동종상품 산업에 대한 관련 경제지표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한다. 다섯째, 수출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에서 보조대상 제품의 생산능력, 수출능력, 재고상황 등 요소를 고려한다. 여섯째, 국내 산업피해를 초래하는 기타 요소를 고려한다. 피해를 확정할 때 반드시 사실을 근거하여, 보조와 비보조의 요소를 명백히 구별하여야 한다.(제8조) 그러나 「상계관세조례」에서 이러한 고려요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숫자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해 여부를 판정하는 자의성이 높다.¹⁶⁹⁾

(나) 피해의 누적평가

피해의 누적평가란 보조대상 제품이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중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당해 제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초래한 영향을 누적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제9조) 피행의 누적평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국가(지역)의 피조사제품 보조금이 미량보조금¹⁷⁰⁾이 아니다. 또는 그 제품의 수입량을 무시할 수 있다. 둘째, 보조대상 제품간의 경쟁조건 또는 보조대상 제품 및 국내 동종상품간의 경쟁조건에 대해 적합하게 누적 평가할 수 있다.

피해의 누적평가를 할 때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① 각 국가(지역)의 보조대상제품이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지속성과 가능성 등의 상황을 고려한다. ② 각 국가(지역)의 보조대상제품 및 국내 동종상품간의 대체가능성을 고려한다. ③ 동일한 지역시장에서 각 국가(지역)의 보조대상제품 및 국내 동종상품의 판매가격, 판매상 제시가격, 실제거래가격을 고려한다. ④ 각 국가(지역)의

169) 李本, 『補貼与反補貼制度分析』, 北京大學出版社, 2005, p.66 .

170) 미량보조금이란 보조대상 제품의 보조금액이 제품가치의 1%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개도국(지역)의 미량보조금은 보조대상 제품의 보조금액이 제품가치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보조대상제품 및 국내 동종상품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매경로가 존재하는지, 시장에서 같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⑤ 보조대상 제품간의 경쟁조건 또는 보조대상 제품 및 국내 동종상품간의 경쟁조건을 고려한다. ⑥ 기타 요소를 고려한다.¹⁷¹⁾

④ 인과관계

상계관세조사에서 보조대상 제품이 동종상품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한다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보조와 피해간의 인과관계는 없으면 상계관세조치를 발동할 수 없다. 보조와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판정할 때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야 한다. ① 보조대상 제품이 국내 동종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② 보조대상 제품의 수입량의 변화상황을 고려한다. ③ 동종상품 국내산업 관련 경제지표 즉 생산량, 판매량, 시장점유율, 이윤, 생산능력, 투자수익 등을 고려한다.

⑤ 공공이익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은 넓은 개념으로 정확하게 합의된 정의가 아직 없으나, 개인 또는 조직 등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해되고 있다. 상계관세조사에서 국내산업의 이익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공공이익 특히 소비자와 구매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건에서 주관기관은 공공이익을 고려하여 구제관세를 취소하거나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아주 적다. 1998년 9월 EU는 중국 등의 6개 국가에서 수입된 실리콘철에 대해 일몰제심에서 수입업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종료한다고 판정하였다.¹⁷²⁾

「상계관세조례」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최종판정에서 보조금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한다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계관세의 부과와 가격약속은 반드시 공공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

171) 「상계관세 산업피해 조사규정」(反補貼產業損害調查規定) 제16조.

172) 皇甫夏黎, 『美國反傾銷立法新發展及我國對策』, 法律出版社, 1999, p.63.

고 있다.(제38조) 수출국 정부나 수출업자가 제기한 가격인하를 약속할 수 있으며, 공공이익에 부합된다고 확정한다면 상무부는 상계관세조사를 중지하거나 완료할 수 있다.(제34조)

(4) 상계관세조치 및 재심

① 잠정조치 및 최종조치

예비판정에서 보조금이 국내산업피해를 초래한 것을 확정한다면 잠정상계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잠정상계관세조치는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담보의 방식으로 한다.(제29조)

잠정상계관세조치의 실시기간은 잠정상계관세조치를 실시한 날로부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계관세조사개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상계관세잠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제31조)

협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보조금과 이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한 것을 확정할 경우에 공공이익을 부합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38조) 최종판정에서 실질적인 피해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경우, 또한 상계관세잠정조치를 이미 취한 경우에 상계관세 잠정조치를 실시한 기간의 최종상계관세를 추정할 수 있다.(제44조)

② 재심

상계관세조치의 재심제도와 반덤핑조치의 재심제도간 큰 차이가 없다. 즉 상계관세재심은 행정재심과 사법재심으로 나누어 되어, 중간재심, 신규수출업자재심, 일몰재심 등이 있다.

상무부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에서 제출한 증거를 심사하여, 상계관세의 부관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할 수 있다.(제48조) 상계관세조치의 재심절차는 반보조금조사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진행한다. 재심의 기간은 재심개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

4) 세이프가드조치

(1) 개설

세이프가드조치(保障措施)는 WTO의 「세이프가드협정」에서 인정된 합법적인 무역구제제도이다. 세이프가드조치란 수입제품의 물량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수입국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피해의 위협을 야기할 경우에 수입국은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관세인상과 수량제한 등의 방식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¹⁷³⁾

세이프가드조치는 반덤핑조치·상계관세조치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대상이 다르다. 세이프가드조치는 정상거래에서 수입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며, 반덤핑조치 및 상계관세조치는 사적 개인·업계 또는 교역상대국 정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다. 둘째, 근거가 다르다. 세이프가드조치는 정상거래에서 수입 제품의 대량증가를 근거하는 것이며, 반덤핑조치 및 상계관세조치는 덤핑과 보조 여부를 근거하는 것이다. 셋째, 잠정조치가 다르다.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는 과세부과로 하는 것이며, 반덤핑잠정조치 및 상계관세잠정조치는 관세부과, 보증금, 보증서 등으로 하는 것이다. 넷째, 실시기간이 다르다.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의 실시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반덤핑 잠정조치 및 상계관세 잠정조치의 실시기간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세이프가드조치의 실시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반덤핑조치 및 상계관세조치의 실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다.¹⁷⁴⁾

현재까지 한·중 양국이 서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즉 2002년 6월 한국은 중국산 마늘에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였다. 중국은 철강제품에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했다. 한 적이 있다. 2002년 5월 20일 중국은 한국, 일본, 러

173) 崔昇煥, 前掲書, p.350.

174) 叶全良·王世春, 『國際商務與保障措施』, 人民出版社, 2005, pp.35-44.

시아, 중국, 대만에서 수입된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사를 시작했다.¹⁷⁵⁾ 5월 24일 상무부는 17개 품목의 철강제품에 대해 6개월의 기간으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실시하였다.¹⁷⁶⁾ 11월 20일 5개 품목의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취하였다.¹⁷⁷⁾

중국은 WTO에 가입하였을 때 특별한 제한조항을 체결하였다. 즉 타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특별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⁷⁸⁾ 세이프가드조치는 조사대상 제품의 공급원(공급원)을 불문하고, 대량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조치이다. 특별 세이프가드조치는 중국 수출제품에 대한 규제조치이다. 한국은 對中 특별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그러나 양국간 무역이 비약적인 발전함에 따라서 한국은 이것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¹⁷⁹⁾

(2) 법적구조와 운용체계

중국은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입법이 늦게 시작하였다. 2001년 12월 국무원에서 「세이프가드조례」를 공포하였고 2002년 1월 1일 시행하였다.¹⁸⁰⁾ 2004년 6월 「세이프가드조례에 관한 일부개정 결정」(國務院關於修改中華人民共和國保障措施的決定)¹⁸¹⁾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례」에 대해 일부 개정하였다. 현행 「세이프가드조례」는 총 5장 34조로 구성되어 관련 규정은 6개가¹⁸²⁾ 있다.

175) 商務部(原外經部) 第29号 公告.

176) 商務部(原外經部) 第30号 公告.

177) 商務部 2003年 第17号 公告.

178) 중국 제품이 교역상대국의 국내시장을 교란하는 경우와 국제무역이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 당해 국가는 중국 제품에 특별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中國加入WTO議定書」 제16조) 그리고 「중국 WTO 가입업무팀 보고서」 중국 방직물·의류 제품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규정을 두고 있다.(「中國加入WTO工作組報告」 제241~242단)

179) 馬光, “論韓國對中國特定產品的過渡性保障機制”.(<http://www.law-lib.com/>)

180) 國務院令 第330号.

181) 國務院令 第403号.

182)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규정」(保障措施產業損害調查規定), 「세이프가드 상품 범위 조정절차 임시규칙」(對外貿易經濟合作部關於保障措施產品範圍調整程序的暫行規則), 「세이프가드조사 결정 임시규칙」(保障措施調查立案暫行規則), 「중국 세이프가드조사 청문회 임시규칙」(保障措施調查听证會暫行規則), 「반덤핑·상계관세조치·세이프가드조치의 강화업무에 관한 의견」(國家經貿委關於加強反傾銷反補貼保障措施

세이프가드조치를 운영하는 주관기관은 상무부, 관세세칙위원회 그리고 세관이 있다. 상무부는 조사개시결정, 예비판정, 최종판정을 하며, 세관은 세이프가드조치를 집행한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제안을 근거하여 관세율을 결정한다.

중국 세이프가드조치의 조사절차는 개괄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가 세이프가드조사개시 신청서와 관련 증거를 상무부에 제출한 후에 상무부는 신청서와 관련 증거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공고한다.¹⁸³⁾ 상무부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에 WTO세이프가드조치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제5조) 둘째, 상무부는 설문조사, 표본조사, 청문회, 현지실사 등의 방식으로 산업피해조사를 진행한다.¹⁸⁴⁾ 수입제품 물량의 증가 때문에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지 않다면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증거가 있는 경우, 상무부는 세이프가드잠정조치를 실시하는 예비판정을 내린다.(제16조)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의 실시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제18조) 셋째,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상무부는 관련 수출업자와 실제이익이 있는 국가정부에 협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24조) 넷째, 수입제품 물량의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피해를 확정한다면 상무부는 세이프가드조치를 실시하는 최종판정을 내린다.(제19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실시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조치의 최초 실시기간 및 연장기간이 총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26조) 동일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재발동은 그 이전의 실시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며 최소한 2년이 경과한 후에야 허용된다. 다만 동일제품에 대한 규제 이후 1년이 경과하였거나 이전 5년 동안 2번 이상 동일제품에 대해 발동된 적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180일 이내에도 재발동이 가능하다.(제30조)

工作的意見), 「반덤핑·상계관세조치·세이프가드조치의 조사와 판정위원회의 설립 및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반덤핑·상계관세사무실의 설립에 관한 통지」(國家經濟貿易委員會和國家統計局關於授予有關行業協會反傾銷、反補貼、保障措施的有關職能及委托有關工作的通知).

183) 「세이프가드조사 결정 임시규칙」(保障措施調查立案暫行規則) 제27조.

184)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규정」(保障措施產業損害調查規定) 제16조.

(3) 실제적 요건

① 수입물량의 증가

세이프가드조사에서 물량의 증가에 대해 확정하여야 한다. 물량의 증가란 수입제품의 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거나 또는 국내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제7조) 여기서 절대적으로 증가란 수입제품의 물량이 이전의 동일한 시기에 비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란 수입제품의 물량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 국내 동종상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 또는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상품의 물량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례로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¹⁸⁵⁾

② 심각한 피해와 피해의 위협

피해란 수입제품의 물량증가가 국내 동종상품 또는 직접경쟁제품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피해의 위협을 초래할 것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관련 국내산업에 전체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의 위협이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분명하게 예견될 수 있고 긴박한 상황이 명확하게 판정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¹⁸⁶⁾

심각한 피해와 피해의 위협을 확정할 때 심사하는 요소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제품의 적대 또는 상대적인 증가율 및 증가물량을 심사한다. 둘째, 국내시장에서 수입제품의 점유율을 심사한다. 셋째, 수입제품의 물량증가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다.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산업의 생산량, 판매량, 시장점유율, 생산효율, 설비가동율, 이윤, 손실, 고용 등을 포함한다. 넷째,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기타 요소를 심사한다.(제8조) 피해의 위협에 대한 확정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미미한 가능성에 근거할 수 없다.

철강사례에서 상무부는 미국이 철강 세이프가드조치를 실시한 후에¹⁸⁷⁾ 이어

185) 叶全良·王世春, 『國際商務与保障措施』, 人民出版社, 2005, pp.345-346.

186)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규정」(保障措施産業損害調査規定) 제4조.

187) 2001년 미국이 「통상법」 제201조에 의해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하였고, 2002년 3월

서 E.U., 캐나다, 체코, 폴란드 등 국가(地區)들이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기 때문에¹⁸⁸⁾ 중국·미국·E.U.가 철강 주요 수입국이므로 철강 제품이 중국시장으로 급격히 진입할 것으로 판정하였다. 그래서 상무부는 국내 철강산업에 피해의 위협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였다.

③ 인과관계

상무부는 개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근거하여, 수입제품의 물량증가 및 국내 산업피해간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제11조) 일반적으로 상무부는 수입제품의 물량증가 및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의 판정이유와 증거를 설명한다. 그러나 「세이프가드조례」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철강사례에서 상무부는 청강 수입제품의 물량과 국내 철강 산업피해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즉 2002년 1~10월 철강수입제품의 물량이 지난해 동기대비 51%를 증가하였다. 이와 국내 철강제품의 가격하락, 판매량감소 등의 지표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마늘사례에서 한국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마늘 가격이 국산가격의 30% 수준에 불과하므로 수입증가와 국산마늘의 가격하락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¹⁸⁹⁾ 반면 상무부에서 한국무역위원회는 판정은 사실과 다르며, 중국이 한국의 마늘 주요수출국으로 한국의 마늘 세이프가드조치가 중국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며, 한국은 중국과 협상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WTO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斷章取義하며, 한국은 중국 對韓 9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무시하고 중국의 對韓 수입을 확대하지 않고 전부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⁹⁰⁾

5일 대통령령으로 철강 수입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였다. E.U., 한국, 일본, 중국 등 국가들의 제품이 이를 당하였다. 2003년 10월 10일 WTO 분쟁해결기구는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의하여 미국 철강세이프가드조치가 WTO 규범을 위반한다고 판정하였다.

188) 2002년 3월 27일 E.U.는 17개 품목의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잠정조치를 취하였고, 2002년 9월 29일 7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취했다. 캐나다는 2002년 3월 21일에 세이프가드조사를 시작하였고, 2002년 7월 4일 캐나다 국제무역법정에서 국내 일부 철강제품 피해에 대해 판정하였다.

189) 金汝善, “韓·中 通商摩擦의 法的 問題”, 『通商法律』, 2002.12. p.43.

190) 商務部(原對外經濟貿易合作部), “就韓國對進口大蒜採取保障措施一事發表談話”, 人民日報, 2000. 6. 8.

(4) 세이프가드조치 및 재심

① 잠정조치와 최종조치

수입제품 물량의 증가 때문에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지 않다면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증거가 있는 경우, 상무부는 세이프가드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는 관세인상의 방식으로 한다.(제16조) 상무부는 세이프가드잠정조치를 실행하기 전에 국제 세이프가드조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제17조)

수입제품 물량의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피해를 확정한다면 상무부는 공공이익을 부합하는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는 관세인상, 수입물량제한 등의 방식으로 한다.(제19조)¹⁹¹⁾

② 재심

세이프가드조치의 실시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상무부는 조치실시동안 내에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중간재심을 하여야 한다. 재심의 내용은 세이프가드조치가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국내산업의 조정상황 등이 있다. (제28조) 세이프가드조치는 관세인상의 방식으로 실시된 경우에는 상무부의 재심결과와 제안을 근거하여 관세세칙위원회가 관세부과의 취소, 유지, 인상, 인하에 대해 결정한다. 세이프가드조치는 수입물량제한 등의 방식으로 실시된 경우에는 상무부는 수입물량제한의 취소, 유지, 증가, 감소에 대해 결정한다. (제29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재심제도는 반덤핑조치·상계관세조치의 제심제도에 비교해 보면 재심의 시간규정을 약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심절차는 대체로 일치한다.

191) 여기서 공공이익의 개념이 반덤핑조사와 상계관세조사에서 규정된 공공이익과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3. 小結論

1) 정부의 해결방안

(1) 무역수지의 개선

중국 對韓 무역적자가 양국간의 통상마찰에 누적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은 한국으로 수출을 확대하며, 중국기업들이 한국에서 직접투자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노력할 수 있다. 한편 양국은 무역수지 통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 통계방법이 동일하도록 노력한다. 즉 정부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홍콩의 중계무역으로 야기된 통계차이의 통상현안을 해결한다. 또한 중국에서 한국기업들의 현지법인 투자에 따른 수입이 한·중 간 무역에 대한 영향이 크다. 현지법인의 제3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중국 무역흑자 유발효과도 매우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¹⁹²⁾

(2) 시장경제국 지위의 부여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안정된 개혁성과를 거두고, 여러 측면에서 예측가능한 수준이 됐을 때 비로소 시장경제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¹⁹³⁾ 2005년 APEC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중국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의 ‘한·중 무역투자협력 확대 양해각서’와 ‘무역구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반덤핑조사에서 중국은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국기업들에 대해 불리한 지위에 있는 상황이 항상 나타난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었다. 현재 한국은 중국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했음으로써, 양국간 통상관계의 증진에 분명한 효과가 보인다. 즉 앞으로 한국은 對中 반덤핑조사를 할 때, 제3국의 국내 판매

192)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실, 『대중 투자의 수출입 효과』, 2002.2.27.

193) <http://www.endia.co.kr/company/kmcontent.php?id=8&table=kmeconomicout&offset=2>

가격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 중국의 국내 판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산정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중국의 보조행위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양자협약

현재 양국간 이루어진 산업피해구제조사 및 판정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¹⁹⁴⁾ 이에 따라 양국은 협의를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양국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주관기관은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운용 상황 및 경험을 교환한다. 그리고 산업피해구제제도 관련 법규와 정책에 대하여 서로 문제를 제출하며, 의견을 항상 교환한다. 산업피해구제 조사가 신청된다면 당해 주관기관은 상대나라 주관기관에 상황을 즉시 통지한다. 조사개시를 결정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협상을 통하여 가격 조정 및 양허를 하도록 하고, 상대방에게 가격의 준비·조정 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¹⁹⁵⁾

(4) 사전예방

사전예방 노력을 할 수 있는 「반덤핑 사전예고제」와 같은 제도의 신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¹⁹⁶⁾ 효율적인 예방책은 산업협력 강화를 통해 對中 수출증 품목에 대해 신속하게 중국의 주관기관, 현지 언론 및 업계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반덤핑 등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수출 업계의 자율적인 수출 자제노력과 부당한 덤핑 수출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동종 업계의 과당 경쟁은 불필요한 가격인하를 야기하고, 이에 추가적인 덤핑 오해효과를 초래하므로 업계가 자제할 필요

194) 「한·중 산업피해 구제분야에서의 협력증진 양해각서」, 1999,8,24.

195) 金汝善, “韓·中間 반덤핑規制에 關한 研究”, 『통상법률』(通卷 第39號), 2001,6, p.60.

196) 金汝善, “中國의 對韓 反덤핑 規制에 對한 對應理論開發에 關한 研究”, 『成均館法學』 제17권 제2호, 比較法研究所, 2005, pp.525-527.

가 있다.

(5) 정부지원

한국 정부는 국내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정·지원함으로써 안정된 통상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덤핑 제반 문제를 정부는 사전에 미리 검토하여 가능한 덤핑수출이 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조사를 당한 경우, 정부는 해당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응소하도록 격려하여야 하며,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6) 홍보강화

한국 정부는 중국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개정 및 신설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의 법률·제도 현황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중국의 입장을 이해시켜야 한다. 국내업체에 대한 홍보활동으로는 변호사나 통상컨설턴트를 활용한다. 또한 중국문화와 國情을 이해하고 중국 시장·제품의 상황을 파악하고, 한국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양국 간의 통상 분쟁을 방지한다.

2) 기업의 해결방안

(1) 적극적인 응소

반덤핑 조사를 당한 경우 기업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반덤핑규제를 당하지 않도록 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보통 기업은 응소하지 않다면 국외 조사기관이 신청자에서 제출한 자료와 데이터에 근거하여, 기업에 대한 가장 불리한 판정을 내릴 것이다.

기업이 우선 반덤핑 응소는 기업의 권리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로 인식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이 반드시 규정된 기간 내에 응소하여야 하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기업이 답변서, 청문회 등의 기회를 운용하고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덤핑, 피해, 인과관계, 신청인자격, 조사대상 제품의 범위 등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관기관에 조사국의 법규에 따라 조사를 한다고 요구하여야 한다.

(2) 조사에 대한 적극 대응

조사대상 기업이 조사에 응소하기로 결정한 이후 조사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주관기관에 제출할 답변서와 관련 자료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규정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성실하고 설득력이 있게 제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답변서·판정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답변서에 대해 기밀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 실사가 서면자료와 데이터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상무부는 현지 실사에서 답변서 내용의 채용 여부에 대해 증거를 수집할 것이다. 따라서 현지 실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조사팀에 진실상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조사대상 기업이 반덤핑 조사에서 法定 권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청문회의 개최 신청권 및 참가권, 현지실사의 동의권, 가격승낙제출권, 재심에 관한 권한 등이 있다. 넷째, 기업 내부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회계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행정재심 및 사법재심에 대해 중시한다. 관세부과 기간 내에는 건전한 수출 질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원칙을 세우고, 상황의 변화 또는 수출자의 변경 때문에 행정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第 5 節 不公正貿易慣行 關聯 通商摩擦

1. 不公正貿易慣行 關聯 通商摩擦 現況

1) 개설

불공정무역관행(unfair trade practice)은 ‘불공정한 정부의 통상관행’이라는 점에서 기업 등 私的 주체가 수출입거래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불공정행위’와는 구별된다.¹⁹⁷⁾ 불공정무역관행의 개념은 WTO 등 국제기구에서도 구체적으로 정의된 것이 없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수출기업에 생산 및 수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기타 불합리한 수입물량제한, 기술기준제한, 행정규칙의 수단으로 타국에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근거하여 각국들이 불공정무역관행에 관한 대항 법규를 제정하였다. 즉 국제규범과 절차를 준수함에 따라 교역상대국의 불공정관행으로 인해 국내 산업 피해를 해소하며, 자국이 교역상대국의 불공정관행에 대해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301조에서는 교역상대국 정부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1995년 E.U.는 「무역장벽규칙」(Trade Barriers Regulation, TBR)을 실행하였다.¹⁹⁸⁾

현재 중국은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제소된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06년 1~6월 동안 중국은 32건의 반덤핑 제소를 당하였으며, WTO에 가입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11년 동안 반덤핑 被訴國 중에서 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캐나다가 중국에 3건의 반보조금조사를 하였고, 2006년 11월 23일 미국이 중국의 제지업계에 대해 반보조금조사를 시작했다.¹⁹⁹⁾ 그리고 중국은 세이프가드조치와 특별세이프가드조치를 많이 당하고

197) 서헌제, 전게서, p.466.

198) <http://wto.12365.net.cn/tradeResearch/subjectResearch/htm/09.htm>

199) <http://news.wtolaw.gov.cn/gb/info/wtoyfz/ALXD/2005-06/09/0934314774.html>

있다. 특히 2005년 미국은 중국의 방직·의류 제품에 특별세이프가드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이로 인해 국내 방직·의류 산업에 약 12.6억 달러의 손실을 끼치고, 약 10만 명의 노동자의 실업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²⁰⁰⁾ 결국 2005년 11월 양국 정부가 「중·미 방직물과 의류에 관한 양허각서」(中華人民共和國政府與美利堅合眾國政府關於紡織品和服裝貿易的諒解備忘錄)를 체결하였다.²⁰¹⁾

무역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도 중국은 통상마찰을 겪고 있다. 이전에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각각 1992년, 1994년, 1995년에 스페셜 301조 조사를 시작하였고, 중국과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양허각서·쌍무협정²⁰²⁾을 합의하였다.²⁰³⁾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불공정무역관행을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은 국내 대항입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대외무역법」, 「반덤핑조례」, 「상계관세조례」, 「세이프가드조례」 법규에서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규정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확하기 위하여 상무부는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을 제정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법규를 마늘분쟁, 김의 수입쿼터, 중·일간 농산물분쟁²⁰⁴⁾ 사례에서 운용한 적이 있다.

2) 한·중 마늘분쟁

우선 한국 무역위원회는 한국 농협중앙회의 요구에 따라 중국산 수입마늘에 산업피해조사를 시작하였고, 중국산 마늘 對韓 수출의 증가가 국내 마늘 산업에 피해를 초래한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수입된 중국산 마늘 가격이 한국산 가격의 30% 수준에 불과하므로 수입증가와 한국 마늘 시장가격의 하락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한국 무역위원회는 2000

200) <http://finance.people.com.cn/GB/1038/3409843.html>

201) 商務部 2005年 第84号 公告.

202) 「中華人民共和國政府與美利堅合眾國政府關於保護知識產權的諒解備忘錄」, 「有效保護及實施知識產權的行動計劃」, 「關於中國在1995年知識產權協議項下所採取的實施行動的報告」, 「其他措施」가 있다.

203) <http://www.ipr.gov.cn/cn/zhuanti/tanpan.htm>

204) 2001년 중국은 일본의 3개 품목의 중국산 농산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가 차별적 행위라고 지적하였고 자동차, 휴대폰 그리고 에어컨에 대하여 100%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대응한 적이 있다.

년 5월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3년간 30%에서 최고 315%로 대폭 올리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면서 마늘분쟁이 시작되었다.²⁰⁵⁾ 이후에 양국정부가 2차례의 협상을 하였으나, 모두 상대방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마늘 세이프가드조치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성 조치라는 이유로 동년 6월 7일 중국 「대외무역법」 제7조에 근거하여, 한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 「대외무역법」 제7조에서 어떠한 국가(지역)이 중국에 대하여 차별적인 무역 금지나 제한 그리고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한 경우, 중국도 실제적 상황에 근거하여 상응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입국의 중국 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행위가 있다면 중국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무부에서 한국무역위원회는 판정은 사실과 다르며, 중국이 한국의 마늘 주요수출국으로 한국의 마늘 세이프가드조치가 중국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며, 한국은 중국과 협상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WTO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斷章取義하며, 한국은 중국 對韓 9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무시하고 중국의 對韓 수입을 확대하지 않고 전부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²⁰⁶⁾

양국 정부는 마늘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3회 협상을 통해 「한·중 마늘교역협정」(中國政府与大韓民國政府關於大蒜貿易協議)을 체결하였다.²⁰⁷⁾ 중국정부는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對韓 마늘 수출 관리에 대한 잠정규정」²⁰⁸⁾을 제정하였다.²⁰⁹⁾

205) 한국 「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41호.

206) 商務部(原對外經濟貿易合作部), “就韓國對進口大蒜採取保障措施一事發表談話”, 人民日報, 2000. 6. 8.

207) 중국은 한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취소하며, 한국은 2000년 32,000톤 마늘 중국에서 수입하고 향후 매년 5.25%를 증가하기로 하였다.

208) 「商務部(原對外經濟貿易合作部)關於印發關於對韓國大蒜出口管理暫行規定的通知」.

209) 金汝善, “韓·中 通商摩擦의 法的 問題”, 『通商法律』, 2002.12. pp.41-65.

3) 김의 수입쿼터

중국은 김의 주요 생산국이며, 일본은 김의 주요 소비국이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중국산 마른 김·조미 김에 대해 수입쿼터 등의 제한조치로 무역장벽을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이러한 불공정무역관행 때문에 중국산 김 제품이 일본의 국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

2004년 2월 25일 강소성김협회((江蘇省紫菜協會)가 107개 회원기업을 대표하여, 상무부 산하 공평무역국에 對日 무역장벽조사를 신청하였다. 신청자는 일본 정부가 중국산 김 수입에 대해 수입할당제를 취하므로 WTO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무역장벽을 설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소하였다. 4월 22일 상무부는 일본의 김의 수입관리조치에 대해 무역장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시작하였다. 이 사례가 중국은 처음 국내법에 따라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사 기간에 상무부와 관련 부서, 전문가, 학자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이 일본의 김 수입 관리조치와 김 수입기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일본정부의 요구와 조사절차의 규정에 따라 양국 정부간 수차례의 협의를 하였다. 협의에서 일본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승낙하였으므로 상무부는 「무역장벽조사 잠정규칙」 제22조에 의하여 2004년 10월 21일에 무역장벽조사를 중지하였다.²¹⁰⁾ 이후 양국정부는 또 수차례 협상을 통해서 일본정부가 수입쿼터 제한을 완화할 것으로 협의하였다. 일본 수산청(水産廳)에서 2005년 2월 21일에 ‘2005년 일본 김 수입쿼터 계획’을 반포하였고, 중국 수입 마른 김과 조미 김에 관한 원산지규정 조항을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서 중국 상무부는 「무역장벽조사 잠정규칙」 제25조에 의해 김 무역장벽조사를 종료하였다.

본 사례에서 중국은 처음 다른 나라의 행정조치에 대해 조사를 통해 대항법제의 수단으로 타국의 법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중국 통상법에서 법적 역외성(Extraterritoriality)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내법의 역외성에 대해 국제법학자의 긍정적인·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항법제를

210) 商務部 2004年 第65号 公告.

제정함에 따라 각국들이 국내법의 대항법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²¹¹⁾

2. 貿易障壁調査 關聯 法制分析

1) 법적구조와 운용체계

(1) 법적구조

중국은 최근 빈번하게 부딪히고 있는 통상마찰에 대하여 대외무역제도에서 대외무역장벽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대외무역법」에서 대외무역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대응하여 최대한하게 국내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어떠한 나라(지역)라도 중국에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나라(지역)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 대외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무역기관은 단독적으로 또는 국무원 산하 관련 부서와 같이 법규에 의하여 다음 “첫째, 화물수출입, 기술수출입, 국제서비스무역의 국내산업 및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영향, 둘째, 관련 국가(지역)의 무역장벽, 셋째, 법에 따라 반덤핑, 반보조금 또는 세이프가드 등 대외무역구제조치를 취하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필요사항, 넷째, 대외무역구제조치를 피하는 행위, 다섯째, 대외무역에서의 국가안전에 관한 사항, 여섯째, 법에 따른 필요한 조사사항, 일곱째, 기타 대외무역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한 조사사항”에 대해 대응조사를 할 수 있다.(제37조) 주관 기관은 조사 자료에서 획득한 국가기밀과 상업비밀의 지킴에 의무가 있다.(제39조)

「대외무역법」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 「대외무역장벽조사 잠정규칙」(對外貿易壁壘調查暫行規則)을 실시하였다.²¹²⁾ 2004

211) 武長海, “中國貿易壁壘調查第一案－日本紫菜案”, WTO与法治論壇. (<http://www.wtolaw.gov.cn>)

212) 商務部(原對外經濟貿易合作部) 2002年 第31号 公告.

년 김의 수입쿼터 사례에서 「무역장벽조사 잠정규칙」을 운용했던 경험이 있다. 상무부는 「대외무역장벽조사 잠정규칙」의 명칭, 입법목적, 조사기관의 명칭 그리고 무역장벽의 정의에 대해 일부 개정된 후에 2005년 3월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對外貿易壁壘調查規則, 이하 규칙이라고 함)을 실행하였다.²¹³⁾ 「규칙」은 총칙, 조사신청, 조사개시와 자격삼사, 조사와 판정 그리고 부칙 총 5장 37조로 구성하고 있다.

(2) 운용체계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기관은 기타 관련 부서와 대외무역장벽조사를 한다. (「대외무역법」 제39조) 대외무역 주관기관 즉 상무부는 외국의 무역장벽에 조사를 하며, 산하의 수출입공평무역국이 「규칙」을 실시한다.(「규칙」 제2조)

대외무역장벽조사의 절차는 개괄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가 반드시 서면자료의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6조) 상무부는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청 자료에 심사하고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규칙」 제10조) 상무부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에 신청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조사대상 국가정부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에 조사개시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4조) 둘째, 조사 기간 내에 상무부는 조사 대상 조치와 관행에 조사대상 국가정부와 협상을 할 수 있다.(「규칙」 제25조) 셋째, 무역장벽조사의 기간은 조사개시결정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규칙」 제32조)

2) 실제적 요건

(1) 무역장벽

213) 商務部 2002年 第31号 公告.

국제무역규범에서 일반적으로 무역장벽은 관세무역장벽과 비관세무역장벽으로 나누고 있는데, 관세장벽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제한을 하며 비관세장벽은 통관절차상의 무역장벽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량규제, 검역, 원산지규정 등 관련 절차상의 장벽 혹은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등이 있다.²¹⁴⁾

무역장벽에 대해 「규칙」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다음 “첫째, 당해 나라(지역)가 중국과 가입·체결한 다자간 경제무역조약과 양국간의 무역협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다자간 경제무역조약과 양국간 무역협정에서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둘째, 중국제품 또는 서비스의 당해 나라(지역)나 제3국(지역)의 시장에 진입에 대해 장애와 제한이 존재하거나 장애와 제한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국제품 또는 서비스의 당해 나라(지역)나 제3국(지역)의 시장에서 경쟁력에 대해 피해가 존재하거나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해 나라(지역)나 제3국(지역)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중국으로 수출에 장애와 제한이 존재하거나 장애와 제한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지역) 정부의 이러한 조치와 관행을 무역장벽으로 가주된다.(「규칙」 제3조)

이에 따라 반드시 당해 불공정무역관행이 국제통상규범 즉 당해 나라(지역)와 중국간 가입·체결한 다자간 경제무역조약과 양국간의 무역협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중국은 무역장벽조사를 발동할 수 있다. 또는 중국의 수출입과 국내 산업에 피해나 피해의 위협이 존재한 경우에는 조사를 발동할 수 있다.

(2) 피해와 피해의 위협

「규칙」에서 피해와 피해의 위협에 대한 정의가 없다. 그러나 제3조에 근거하여 피해란 중국 제품·서비스의 수출입과 국내산업²¹⁵⁾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피해의 위협이란 바로 피해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여부를 말한다. 여기서 ‘부정적인 영향’이란 「규칙」 제3조에서 규정된 것을

214) 김여선, “중국의 일방적 무역보복조치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69호, 2006.6, pp.61-62 .

215) 반덤핑법규에서 규정된 국내산업과 같이 이해한다.

말한다. 그러나 「규칙」에서 피해와 피해의 위협에 관한 판정기준이 모호하다. ‘부정적인 영향’에 근거하여 판정한다면 주관기관의 자유재량권이 크다는 문제점을 볼 수 있다. 사례에서 주관기관은 보통 수출입의 물량, 조사대상국의 수입량, 조사대상국의 국내 생산량·판매량, 국내산업의 생산량·판매량, 소비상황, 재고상황 등 요소를 고려한다.

3) 조사와 규제

(1) 조사신청

신청자가 대외무역장벽조사를 신청할 때 서면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의 이름, 주소 및 관련 상황, 둘째, 조사대상 조치 또는 관행에 관한 설명, 셋째, 무역장벽조사와 관련한 제품·서비스에 관한 설명, 넷째, 국내 관련 산업의 상황에 관한 설명, 다섯째, 조사대상 조치 또는 관행의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설명, 여섯째, 신청자가 여기는 필요한 내용”이 있다.(「규칙」 제7조) 그리고 신청자가 가능하도록 다음 “첫째, 조사대상 조치·관행의 존재의 증거, 둘째, 조사대상 조치·관행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증거”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 서면의 형식으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규칙」 제8조)

김의 사례에서 신청자는 상무부에 제출한 자료의 중용내용이 다음과 같다. 첫째, 107개 중국 기업들의 생산, 판매, 재고 등 상황, 둘째, 무역수입에 관한 법규와 김 수입의 특정규정, 셋째, WTO의 관련규범과 일본정부의 관세양허 승낙 등이 있다.²¹⁶⁾

(2) 조사개시결정

상무부는 시청자의 요구에 따라 조사개시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직접

216) 陸純, “由自衛變出動出擊, 中國紫菜強攻日本貿易壁壘”, 北京青年報, 2004年2月28日.

조사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규칙」 제4조) 상무부는 신청서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에 대해 심사하여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규칙」 제10조) 상무부는 다음 “첫째, 신청자에서 제출한 자료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정된 경우, 둘째, 신청자에서 제출한 자료가 완전하지 않고 또한 상무부에서 규정된 기간 내에 보충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셋째, 제소된 무역장벽이나 관행이 「규칙」 제3조에서 규정된 내용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넷째, 상무부는 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에 대외무역장벽조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규칙」 제16조)

(3) 조사와 판정

주관기관은 설문조사, 공청회, 현지실사, 위탁조사 등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외무역법」 제38조, 「규칙」 제21, 22조) 필요한 경우에 국무원 관련 부서, 전문가, 학자를 전문가 자문팀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가 자문팀은 조사에서 관련 기술적·법적 문제에 의견을 제안한다.(「규칙」 제20조) 상무부는 다음 “첫째, 조사대상 국가(지역)의 정부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사대상 조치 또는 관행을 취소하거나 조정한다고 승낙한 경우, 둘째, 조사대상 국가(지역)의 정부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중국에 적절한 무역보상을 제공한다고 승낙한 경우, 셋째, 조사대상 국가(지역)의 정부가 경제무역조약 또는 협정의 의무를 이행한다고 승낙한 경우, 넷째, 상무부는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에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규칙」 제26조) 조사대상 국가(지역)의 정부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승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상무부는 조사를 재발동할 수 있다.(「규칙」 제27조) 상무부는 다음 “첫째, 조사대상 국가(지역)의 정부가 조사대상 조치 또는 관행을 취소하거나 조정한 경우, 둘째, 조사대상 국가(지역)의 정부가 중국에 적절한 무역보상을 제공한 경우, 셋째, 조사대상 국가(지역)의 정부가 경제무역조약 또는 협정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규칙」 제29조)

(4) 대응조치

조사대상 조치 또는 관행이 「규칙」 제3조에 의해 규정된 무역장벽으로 판정된다면 상무부는 다음 “첫째, 양자간의 협상, 둘째, 다자간의 분쟁해결제도, 셋째,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규칙」 제33조)

보복조치와 같은 일방적인 강행 조치를 한다면 더욱 광범위한 통상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양자간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편이다. 김의 수입쿼터사례에서 조사개시 이후 일본정부가 중국과 협상을 요구하였다. 중·일 정부간 수차례의 협상을 통하여 일본 정부는 조치를 개정한다고 승낙한 후에 중국은 조사를 중지하였다. 일본정부는 관련 조치를 개정하였음에 따라 당해 분쟁을 해결하였다.

도록 한다. 중국이 처음 무역장벽조사제도를 썼던 판례를 보면 일본의 중국산 김에 대한 차별적인 쿼터규제가 있어서 중국·일본 양국정부가 여러 번 협상을 하였고, 일본정부는 자국의 관련 규정을 개정한 후에 이 분쟁을 해결하였다.

다자간의 분쟁해결제도는 WTO 규범체계하에서 WTO 회원국간의 통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다.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은 강제한 효력이 없으나, 국제사회의 압박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가간의 분쟁해결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 「버드 수정법」²¹⁷⁾ 사례에서 WTO 분쟁해결기구가 한국과 E.U., 일본 등 국가의 對美 무역 보복조치를 승인했다.²¹⁸⁾ 그러나 WTO 분쟁해결의 심리기간이 길기 때문에 항상 국가간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중국은 미국 철강세이프가드조치 사례에서만 WTO 분쟁해결제도를 운용한 적이 있다.

중국은 일방적 보복조치를 사용함으로써 양국간 무역마찰을 더 쉽게 일으킬 수 있다. 마늘분쟁에서 몇 번이나 협상을 해도 협의를 못하자, 중국 측은 한국 측에 압력을 주기 위해 WTO 세이프가드협정 조치의 발동후 일반적 세이프

217) 「버드 수정법」(Byrd Amendment)은 미국 세관이 외국 업체로부터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자국의 피해 업체들에 재분배토록 규정하고 있다.

218) 고지희, “WTO, 對美 무역보복 조치 허용”, 『헤럴드경제』, 2004.11.27.

가드에서는 4년, 對中 특별 세이프가드조치에서는 2~3년 동안의 보복조치발동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규정도 무시하고 일방적 보복조치를 강행했다.²¹⁹⁾ 실체는 중국은 일방적 보복조치를 상대방에 대한 중요한 압박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3. 小結論

중국은 국제통상에서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무역장벽조사를 하고, 양자간의 협상, WTO 분쟁해결제도, 심지어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방적 보복조치는 통상마찰을 일으키기가 쉽기 때문에 양국은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무역장벽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부 중국의 경쟁우위 농산물제품에 대한 수입쿼터가 존재하고 한국의 중의약품에 대한 검사기준 및 통관제도의 투명성과 차별성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중국은 이러한 제도·조치에 대해 무역장벽조사를 발동 또는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한다면 한국은 이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미리 국내의 관련 법령과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간의 협상을 빠르게 이용하여,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국의 일방적 조치의 합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에 조사와 관련한 이해부서가 협상주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합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임시대응팀을 구성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협상을 통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국내 관련 업체에 대한 사후구제를 하여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중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WTO 산하의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를 통한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를 운영하는 상황 및 다른 나라의 대응을 살펴봐야 한다.

한편 갈등의 근원 속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내의 불투명한 법규를

219) 김여선, “중국의 일방적 무역보복조치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69호, 2006.6, p.67 .

개정하며, 중국 측의 불공정한 제도를 지적하고 협상을 통해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구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즉 기업의 對中 투자의 증가가 사전예방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중국 서부 대개발(西部 大開發)과 같은 중국의 국책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양국간 통상관계 증진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²²⁰⁾



220) 김여선, “중국의 일방적 무역보복조치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69호, 2006.6, p.72.

第 4 章 要約 및 結論

한·중간 통상의 심화에 따라 각 분야에서 경제교류가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무역의 양적·질적 성장은 양국의 경제의 발전, 기술의 촉진 그리고 소비수준의 향상에 거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對中 투자의 증가는 對中 경제 의존성을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양국간 수출입의 물량이 한·중 1992년 수교의 53억 달러에 대비하여 2005년 이미 100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또한 기업들의 對中 직접투자가 2005년 말 실행 기준으로 총 13,177건에 130.6억 달러에 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간의 우호방문이 많아지고 있으며, 외교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보통 통상의 확대에 따라서 통상마찰이 발생하는 것이 피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중간의 통상마찰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양국간 무역수지불균형의 현황이 통상마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005년 중국 세관의 통계에 따라 對韓 적자규모가 417.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은 한국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개선노력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물론 홍콩의 중계무역 등 원인으로 양국의 통계결과가 다르지만 매년 對中 무역흑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주요 원인을 보면 ① 양국간 통계차이 ②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가의 증가 ③ 양국간 산업구조차이 등이 있다. 법적 측면에서 양국간 무역불균형에 보면 원산지규정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규정은 한·중간의 통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 입법의 임의성 및 통계방법의 결함성 또는 우회행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을 초래한다.

중국의 對韓 지적재산권침해를 통상마찰의 주요원인으로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지적재산권제도를 TRIPs의 규정에 일치되도록 개정한 이후 지적재산권보호 관련 법체계가 비교적 완벽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실제적으로 침해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대상도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商號權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있다. 특히 음반과 영상물 대부분이 정품이 아닌 불법 모방품·해적판이 유통되어 지적재산권의 실질적 보호가 심한 상태이다. 또한 중국국민 지적재산권의 부족한 인식도와 지방보호주의 등 원인으로 지적재산권보호가 미흡한 상태이다.

다른 나라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합법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중간 산업 피해구제조치의 발동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반덤핑제소는 한국의 對中 36건과 중국의 對韓 28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서로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상마찰을 일으킨다. 특히 마늘분쟁에서 양국 정부가 통상마찰로 인한 악영향을 인식하였다. 즉 통상마찰의 발생은 일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통상관계, 국내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마늘사례에서 중국은 한국산 휴대폰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였음에 따라 중국의 휴대폰제조기업이 한국에서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그 동안 제품생산에 큰 영향을 미쳤고 회사주가 대폭 하락하였다. 그래서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교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민간교류는 통상관계의 증진, 양국의 동종 산업간의 이해 등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간의 글라이포세이트(glyphosate) 사례에서 오스트레일리아는 반덤핑예비판정에서 미국의 국내 판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글라이포세이트 제품에 75%~106%의 덤핑마진의 반덤핑과세를 부과하였다. 중국 관련 협회(商會)가 오스트레일리아 주관기관에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였다. 결국 오스트레일리아 주관기관은 최종판정에서 잠정반덤핑관세를 취소하였다.²²¹⁾

또한 무역장벽과 불공정무역관행으로 인해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인식하여 무역장벽과 불공정무역관행을 제거하도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양국은 자국의 입장에서 상대국

221) 于永達·戴天宇, 『反傾銷理論于實務』, 清華大學出版社, 2004, p.240.

의 무역장벽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본 중국의 무역장벽은 여러 가지가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市場經濟 원칙하에서 무역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도를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무역품목으로서 일부 품목 즉 곡물, 植物油, 綿, 설탕, 담배, 원유, 製油, 화학비료는 외국기업들이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측에서 對韓 사진용 필름, 오토바이 등 일부 품목은 최종 양허관세율이 너무 높게 설정하고 있다. 이런 제품은 한국 對中 수출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이다. 또한 중국정부가 섬유, 유리, 목제품, 철강 등의 국유기업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 관련 산업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품목별 심사인증기관의 지역별 배분과 지방 독자적인 기준 적용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양국간 지적재산권·투자·서비스 분야에서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지적제품에 대한 모방품, 해적판 등 부정제품이 횡행하고 있는 실태를 크게 개선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 분야에서 중국정부가 외국기업들에 대해 투자 제한을 설치하고 있다. 유통, 금융, 통신, 보험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정부간섭과 지방주의보호가 존재하고 있다.²²²⁾

중국 상무부의 “2006년 국별 무역투자환경 보고”²²³⁾에 의하여 한국의 관세, 진입장벽, 위생·식물위생 관련 조치, 무역장벽 등 항목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對中 무역흑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2005년 중국의 對韓 무역적자는 417.1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무역불균형은 양국간 가장 큰 통상 현안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모두 22개 제품에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깨, 마늘, 녹두, 대추 특히 중국의 절대적인 경쟁 우위가 있는 송이버섯, 새우젓 등 11개 품목 제품에 최고 630%의 과세와 수입물량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수산물 제품 對韓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한국산업 규격에 따라 인증절차가 복잡함으로 수출가격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222) http://cafe.naver.com/hotchin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5

223) <http://gpj.mofcom.gov.cn/static/column/z/ab.html/1>

산 약품에 대해서는 세관이 검역증명서, 사료수집증명의 제시를 요구함에 따라 한국의 시장 진입이 불가능하고, 농수산물을 비롯해 수입제품에 대해 엄격한 위생 검사를 실시하여 수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외에 건축,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무역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국간 통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통상마찰을 해소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법적 차원에서 통상마찰과 관련된 중국법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즉 중국의 원산지규정, 지적재산권제도, 산업피해구제제도 그리고 무역장벽조사제도에 대한 인식을 통해 향후 양국간 공정·안정한 통상질서를 구축 또한 양국간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양국간 최대의 통상현안으로의 무역불균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對中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은 협동적으로 대안을 검토해야 하며, 통상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 제품의 수입을 확대시키고 중국 對韓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인한다. 또한 양국간 수출입 통계결과의 불일치에 중국 측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현황에 정확하게 인식하고 공동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양국은 원산지규정에 있는 문제점과 서비스무역에 관한 원산지규정을 즉시 검토하여, 국제적으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공인받을 수 있는 원산지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자간 협약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특혜원산지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무역이 세계경제 중에서 중요해지고 있고, 화물무역과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무역에 관한 원산지규정을 제정하여 양국간 서비스무역을 효율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의 지적재산권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통상마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對韓 지적재산권침해가 직접적으로 양국간 정상적인 통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국은 준법을 강화하여,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를 높이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홍보하여, 지적재산권보호의 분위기를 형성되게 하여야 한다. 한편 일방적인 제재와 보복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는 양국은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위한 독립성을 있는 위원회나 지적재산권 전문법정을 설립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양국 지적재산권 주관기관간 특허검색과 기술정보심사와 지적재산권침해에 관한 정보공유시스템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의식을 향상시키고 정부는 법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만 양국간의 직접투자가 증진할 수 있으며, 통상마찰의 사전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중국과 다른 나라간의 지적재산권분쟁에서 다른 나라의 조치와 중국의 대응을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경험을 검토한다.

셋째, 양국간 WTO 규범 체계하에서 합법적인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발동이 서로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피해구제조치를 남용하기 때문에 양국간의 통상마찰을 초래한다. 따라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소극적인 효과를 어떻게 제거하느냐의 과제가 되고 있다. 한·중간의 경우에 양국은 자국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공정한 무역질서를 보장하며, 조치의 남용에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국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주관기관은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운용 상황 및 경험을 교환한다. 한편 상대국의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전예방을 위하여 양국 정부간·민간간의 교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만 중국은 조치를 발동하기 전에 이와 관련한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조치를 발동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중국의 시기적절한 상황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 대한 법적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부는 수출입 통계를 통해 어떤 품목 제품이 중국 측에서 덤핑이나 세이프가드조치를 당할 가능성을 분석하고, 사전 경보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들에게 하여금 자율적으로 수출입을 규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중국의 「무역장벽조사규칙」에서 다른 나라의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WTO 다자주의와

최소규제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²⁴⁾ 일방적인 보복조치는 통상마찰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양국은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사전예방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에 중국은 對韓 무역장벽조사를 발동한다면 정부 협상을 빠르게 이용하여,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의 불합리한 통상 보복조치에 대해 WTO 산하의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를 통한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를 운영하는 사례 및 다른 나라의 대응을 살펴보아야 한다.



224) 김태운, “한·중 무역마찰에 관한 국제법적 평가”, 『동의논집』 (제35집) 2001.8, p.200.

參 考 文 獻

I. 국내문헌

1. 저서

- 서헌제, 『국제경제법』, 을곡출판사, 1998.
- 신세돈, 『국제수지론』, 세창출판사, 1997.
- 崔昇煥, 『국제경제법』, 법영사, 2006.
- 이춘삼, 『중국통상법』, 大旺社, 2004.11.
- 이은섭, 『대외무역법』, 법경사, 2002.2.
- 도중권 · 라공우, 『최신대외무역법』, 두남출판사, 2004.
- 박종수, 『국제통상론』, 博英社, 2000.
- 李大根, 『韓國貿易論 - 韓國經濟, 先進化의 길』, 法文社, 2002.
- 박노경, 『국제수지요약론』,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0.9.
- 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실, 『대중투자의 수출·입 효과』, 2002.2.27.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최근 대중국 해외투자동향』, 2005.5.12.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한·중 무역 불균형 원인 분석』, 2003.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제협력과, 『중국지적재산권』, 2005.6.

2. 논문

- 金汝善, “韓·中 通商摩擦의 法的 問題”, 『통상법률』, 2002.12.
- 金汝善, “中國의 對韓 反덤핑 規制에 대한 對應理論開發에 관한 研究”, 『成均館法學』 제17권 제2호, 比較法研究所, 2005.
- 金汝善, “中國의 對韓 反덤핑 規制에 대한 對應理論開發에 관한 研究”, 『成均

- 館法學』 제17권 제1호, 比較法研究所, 2005.
- 張權鎬, “반덤핑제도의 운영현황과 제도적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9.12.
- 최송자, “대중국 무역구제 신 동향 및 중국의 보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국제거래법연구』 (제14집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05.
- 金汝善, “韓·中間 반덤핑規制에 關한 研究”, 『통상법률』 (通卷 第39號), 2001.6.
- 金汝善, “중국의 일방적 무역보복조치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통권 제69호, 2006.6.
- 김병주·이선아,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제도의 분석 및 실효성에 관한 고찰”,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세미나』,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3.
- 김태곤, “일본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중국이 보복조치”, 국제농업연구실, 2001.6.
- 김태운, “한·중 무역마찰에 관한 국제법적 평가”, 『東義論集』 (第35輯) 2001.8.
- 문해주,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진전”, 과학기술부, 2005.7.
- 권종오, “관세사 대외무역법”, 한국고시회, 2002.
- 김상구, “對中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 연구”,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세미나』,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3.
- 이주윤·고상범, “WTO 체제 하의 반덤핑 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 및 향후 한국에의 교훈”, 『제3회 산업피해구제제도 대학원생세미나논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 홍순직, “국제 반덤핑 규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 정인교, “동북아 경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12.
- 이해완, “중국 저작권법 개관”. (<http://www.sol-law.net/>)

3. 기타자료

무역위원회(<http://www.ktc.go.kr/>)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kr/index.jsp>)

전국경제인연합회(<http://www.fki.or.kr/Main.aspx>)

법제처(<http://www.moleg.go.kr/>)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mofat/index.jsp>)

II. 국외문헌

1. 저서

余勁松·吳志攀, 『國際經濟法』(第2版), 北大出版社, 2006.1.1.

馮大同, 『國際貿易法』, 北京大學出版社, 2001.

尚明, 『反傾銷-WTO規則及中外法律與實踐』, 法律出版社, 2004.

余先予, 『涉外經濟法總論』(第2版), 法律出版社, 2005.

肖偉, 『國際反傾銷法律與實務-美國卷』, 中國知識產權出版社, 2005.8.1.

李本, 『補貼與反補貼制度分析』, 北京大學出版社, 2005.

李毅·李曉峰, 『國際貿易救濟措施--反傾銷,反補貼,保障措施與特保措施』, 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 2005.

叶全良·王世春, 『國際商務與原產地規則』, 人民出版社, 2005.

叶全良·王世春, 『國際商務與知識產權保護』, 人民出版社, 2005.

皇甫夏黎, 『美國反傾銷立法新發展及我國對策』, 法律出版社, 1999.

叶全良·王世春, 『國際商務與保障措施』, 人民出版社, 2005.

于永達·戴天宇, 『反傾銷理論與實務』, 清華大學出版社, 2004.

屈光清, 『反傾銷法律問題研究』, 法律出版社, 2004.

高永富·張玉卿,『國際反傾銷法』,夏旦大學出版社,2001.

2. 논문

袁古浩,“論中國反補貼体系的建立与完善”,『經濟与法』,2003.

宋明順·耿金鳳,“WTO《原產地規則協議》及對世界貿易影響”,『國際經貿探索』,2001.

都毫,“我國入世后補貼机制的調整”,『當代法學』(第11輯),2003.

張栩,“入世后我國補貼与反補貼問題的法律對策研究”,中山大學,碩士學位論文,2003.

高建華·康玉燕,“原產地標記-國際貿易中產品的護照”,『中國法制』,2002.

張傳明·曹培忠·周艷波,“美國貿易法“301條款“的法律審視-以對中國法律的借鑒意義為視角”,法律圖書館 論文資料,2003.

王學,“世界貿易組織原產地規則及其貿易影響探析”,西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0.

侯華偉,“世貿組織補貼与反補貼協議”,『船舶經濟貿易』,2002.3.

劉建偉,“反傾銷案頻發,保障措施案劇增-2002年全球貿易保護案件分析”,『國際商報』,2003.8.28.

馬光,“論韓國對中國特定產品的過渡性保障机制”,法律圖書館 論文資料.

武長海,“中國貿易壁壘調查第一案-日本紫菜案”,WTO与法治論壇.

宋和平,“產業損害調查中的五大問題”,『中國經貿導刊』,2002.

沈四宝·陳衛東,“關注我國保障措施法律規定新變化”.

許子英,“反傾銷法律實踐中的產業損害問題”.

3. 기타자료

商務部,『國別 貿易 投資 環境 報告2004』,『國別 貿易 投資 環境 報告2005』,『國別 貿易 投資 環境 報告2006』.

中國網, “中國入世報告”. (<http://www.china.org.cn/chinese/>)

中國稅關統計. (<http://www.customs.gov.cn/>)

香港貿易發展局統計處. (<http://www.tdctrade.com/>)

商務部 商務統計. (<http://www.mofcom.gov.cn/tongjiziliao/tongjiziliao.html>)

中國經濟網. (<http://finance.ce.cn/>)

中國貿易救濟信息网. (<http://www.cacs.gov.cn/DefaultWebApp/index.htm>)

國際經濟法網. (<http://www.intereconomiclaw.com/>)

中國知識產權網. (<http://www.cnipr.com/>)

